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制度和
所得移轉에 관한 分析

韓國租稅研究院

目 次

I. 序 論	7
II. 韓國의 對內·外 直接投資 動向	9
1. 外國人의 對韓 直接投資	9
가. 外國人 直接投資의 變化推移	9
나. 韓國 經濟에서 外國人 直接投資가 차지하는 比重	15
다. 外國人 直接投資의 產業別 構成	16
라. 投資者 居住地國別 外國人 直接投資의 構成	18
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19
가. 海外直接投資의 變化推移	19
나. 海外直接投資의 產業 및 投資對象國別 構成	22
III.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制度	25
1.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韓國의 課稅制度	25
2. 移轉價格課稅制度	30
가. 移轉價格稅制의 適用對象	31
나. 移轉價格의 決定	32
다. 立證責任 및 資料提出의 義務	42
3.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에 대한 實效稅率	44
IV.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 分析	51
1. 研究方法	51
2.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 分析	57
가.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利益率 比較	57
나. 外國人 投資比率別 利益率 比較	58

다. 產業別 利益率 比較	64
라. 投資者 居住地國別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比較	66
V. 要約 및 結論	68
參考文獻	75

表 目 次

〈表 II - 1〉外國人の對韓 直接投資 動向	11
〈表 II - 2〉長期資本의 純流入額	12
〈表 II - 3〉生産費用과 外國人 直接投資 規模의 比較	15
〈表 II - 4〉外國人 直接投資의 重要性	16
〈表 II - 5〉外國人 直接投資의 産業別 構成	17
〈表 II - 6〉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者 居住地國別 構成	19
〈表 II - 7〉韓國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20
〈表 II - 8〉海外直接投資의 産業別 構成比	22
〈表 II - 9〉海外直接投資의 投資對象國 構成比	23
〈表 II - 10〉韓國人の 海外直接投資 動機	24
〈表 III - 1〉OECD 會員國과 韓國의 企業課稅制度 比較(1991年) ...	28
〈表 III - 2〉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法人稅 納付實績 ...	46
〈表 III - 3〉外國人 投資企業과 國內 企業의 實效稅率 (1988~1991年)	49
〈表 III - 4〉賣出額 및 資産規模에 대한 法人稅 納付額의 比率	50
〈表 IV - 1〉居住地國 租稅制度和 所得移轉의 方向	55
〈表 IV - 2〉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利益率 比較	57
〈表 IV - 3〉製造業部門 外國人 投資企業의 特性(1991年)	60
〈表 IV - 4〉外國人 投資比率別 利益率 比較	60
〈表 IV - 5〉國內 企業의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	63
〈表 IV - 6〉集團 A의 賣出利益率 推移	64
〈表 IV - 7〉産業部門別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1988~1991年)	65
〈表 IV - 8〉外國人 投資者의 居住地國 租稅制度에 따른 平均利益率 (1988~1991年)	67

圖 目 次

[圖 II-1] 外國人 對韓 直接投資 推移	12
[圖 II-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1
[圖 IV-1] 營業利益 / 賣出額 推移	61

I. 序 論

多國籍 企業集團은 관계기업간의 거래인 移轉去來에 대한 價格 즉, '移轉價格'을 조작하여 高稅率國의 所得을 低稅率國으로 이전시킴으로써 企業集團 全體에 대한 租稅를 절약하고 利益(global profit)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租稅當局은 課稅權 보호차원에서 移轉價格決定을 規制함으로써 多國籍 企業集團 構成員間的 利益配分을 調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최근 多國籍 企業의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韓國 政府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移轉價格 조작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1984년까지는 政府가 外國人 直接投資를 직접적으로 統制하여 國家經濟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外國인의 國內 直接投資를 허용하였으며, 直接投資 流入額의 規模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政府의 주된 관심은 移轉價格 規制를 통한 課稅權의 확보보다는 오히려 租稅減免 등의 誘引制度를 통해 政府가 원하는 部門의 直接投資 流入을 誘導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들어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政府의 규제가 완화되고 直接投資 流入額의 규모가 증가되자 韓國 政府도 移轉價格 規制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外國人 投資企業의 수가 약 2,500개에 달하고 연간 外國人 投資流入額이 약 13億달러에 달하게 된 1988년 경에는 移轉價格 規制가 國際租稅部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外國人 直接投資의 流入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다른 많은 국가들이 移轉價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¹⁾, 韓國 租稅

1) 예를 들어 日本은 1986년에 移轉價格課稅制度를 도입하였다.

當局도 稅法改正을 통해서 價格規制條項 즉, 移轉價格稅制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多國籍 企業의 운영과 관련된 稅制을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1989년 1월 1일부터 施行된 稅法改正 이전에는 法人稅法 제20조에 의거하여 納稅者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法人의 所得에 대한 租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政府가 그 法人의 所得金額을 조정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法人稅法 施行令'에 열거되어 있는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租稅當局이 移轉價格稅制을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韓國 政府는 法人稅法 施行令의 개정 에 이어 1990년 1월 24일에는 獨立企業價格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규정과 함께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된 「移轉價格稅制의 運營에 관한 規定」을 制定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韓國의 移轉價格稅制 관련 규정은 1979년에 작성된 OECD의 移轉價格決定 지침에 기초를 둔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韓國의 課稅制度和 國內 外國人 投資企業의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所得移轉行爲 분석을 통해서 향후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政策, 특히 1989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移轉價格課稅制度의 政策方向을 모색한다. 제 II 장에서는 外國人 直接投資 및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動向과 產業別·國別 分布 및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는 移轉價格課稅制度를 포함하여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韓國의 課稅制度를 檢討하고 과거의 資料를 이용하여 外國人 投資企業의 실제 稅負擔이 다른 國內 企業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제 IV 장에서는 韓國에서 활동하고 있는 多國籍 企業들이 移轉價格의 操作을 통해 所得을 韓國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한 후 본 연구가 제시하는 政策的 示唆點에 대해서 논의한다.

II. 韓國의 對內·外 直接投資 動向

本章에서는 外國人의 對韓 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및 韓國의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동향을 살펴본다. 먼저 外國人의 對韓 直接投資(이하 '外國人 直接投資')의 變化推移와 產業別·國別 構成을 살펴본 다음 韓國人의 海外直接投資(이하 '海外直接投資')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國際的인 資本去來에 있어서 直接投資란 한 국가의 企業 또는 個人이 다른 국가의 企業 經營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投資를 의미하는 것으로 支店 形態의 海外進出과 現地法人 形態의 海外進出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인용되는 直接投資 統計는 모두 現地法人 형태의 直接投資를 나타내는데 이는 支店 形態의 直接投資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 外國人의 對韓 直接投資

가. 外國人 直接投資의 變化推移

1962년부터 시작된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은 1980년대 초까지 政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 시기의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政府의 통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經濟發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종 支援制度를 통해서 해당 外國人 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誘致對象에 포함되지 않는 外國人 直接投資의 유입은 전반적으로 억제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政府 政策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政府는 대부분 發展初期段階에 머물러 있었던 韓國 企業을 資本과 技術面에서 利點을 가지고 있는 外國 企業 또는 外國人 投資企業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 취지하에서 外國人들은 그들의 生産品을 모두 輸出하거나²⁾ 한국 政府가 國內 産業發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부문(대부분 製造業에 속함)에 투자한다는 조건하에 韓國에 대한 投資가 허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外國人들은 韓國 企業과 合作投資를 한다는 조건으로 韓國에 대한 投資를 許可받을 수 있었다³⁾. 合作投資 조건을 통해서 政府는 國內 企業에 대한 外國人의 통제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多國籍 企業의 技術波及效果를 極大化하고자 하였다. 合作投資 條件 및 全量輸出 條件은 韓國 企業의 競爭力이 강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政府 政策의 결과 一部 製造業種을 중심으로 한 誘致對象 業種의 外國人 直接投資 流入額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부문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은 부진하여 전체적으로는 1980년대 초까지도 연간 유입액이 2億달러에도 못 미쳤다(〈表 II-1〉과 [圖 II-1] 참조). 이는 1982년 海外借款 導入이 27億 9,500달러에 달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表 II-2〉는 1974~1981년의 直接投資 純流入額⁴⁾이 借款과 포트폴리오投資 그리고 直接投資를 포함하는 長期資本 純流入額의 5%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포트폴리오투자 流入額은 直接投資 유입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1970년대 韓國

2) 1979년 말까지 유입된 外國人 直接投資의 약 70%가 이 조건의 적용을 받았다. 朴乙鏞(1979) 참조.

3) 당시 輸出增大는 韓國 經濟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內需指向的인 直接投資의 外國人 持分은 政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된 반면, 輸出指向的인 直接投資의 경우에는 合作投資 조건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았다.

4) 資本 純流入額 = 總流入額 - 元金の 回收 또는 償還額

〈表 II - 1〉 外國人の 對韓 直接投資 動向¹⁾

(單位: 百萬달라, %)

	新 規 投 資		總 投 資 ²⁾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1962~1966	46.5		47.4	
1967~1971	169.1	263.7	218.6	361.1
1972~1976	610.5	261.0	879.4	302.3
1977~1981	288.8	-52.7	720.6	-18.1
1982~1986	686.9	137.8	1,767.7	145.3
1987~1991	2,753.6	300.9	5,636.0	218.8
1977	53.1		83.6	-98.5
1978	56.3	6.0	149.4	78.7
1979	98.3	74.6	191.3	28.0
1980	42.7	-56.6	143.1	-25.2
1981	38.5	-9.8	153.2	7.1
1982	101.1	162.6	189.0	23.4
1983	91.9	-9.1	269.4	42.5
1984	217.7	136.9	422.3	56.8
1985	144.2	-33.8	532.2	26.0
1986	131.9	-8.5	354.7	-33.4
1987	556.8	322.1	1,063.3	199.8
1988	583.1	4.7	1,283.8	20.7
1989	426.6	-26.8	1,090.3	-15.1
1990	336.6	-21.1	802.5	-26.4
1991	850.3	152.6	1,396.0	74.0
1992	328.0	-61.4	894.5	-35.9
1993	485.9	48.1	1,044.3	16.7
1962~1993	5,369.3		11,2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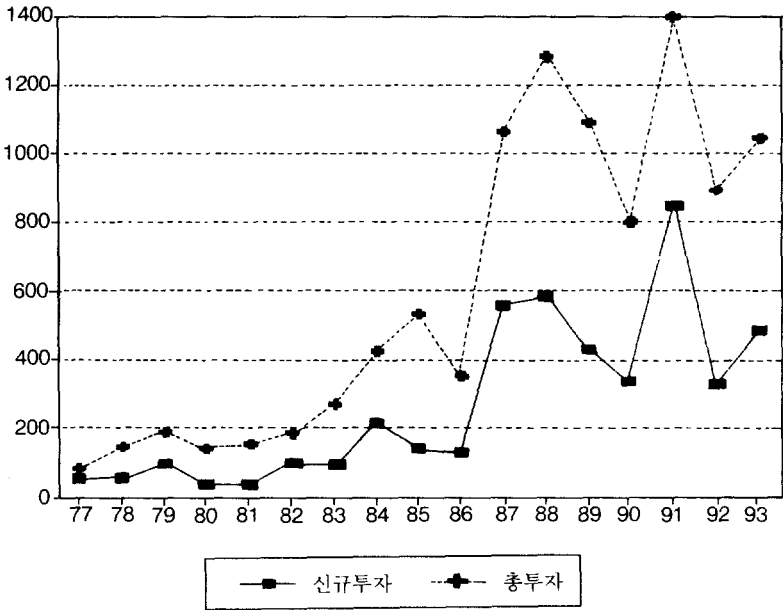
註: 1) 申告受理 및 認可基準임.

2) 總投資는 新規投資와 增額投資의 合計임.

資料: 財務部 經濟協力局, 『外國人 投資動向』, 1994. 8. 31.

經濟의 급속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外國 資本의 대부분이 直接 또는 포트폴리오投資가 아닌 借款을 통해 조달된 것임을 입증해 준다.

[圖 II - 1] 外國人 對韓 直接投資 推移



<表 II - 2> 長期資本의 純流入額

(單位: 百萬달러, %)

	借 款 및 投 資 (A)	直接投資 (B)	포트폴리오 投 資 (C)	B/A	B/C
1974~1981	11,959.1	583.0	312.6	4.9	186.5
1982~1986	5,533.4	916.2	1,817.8	16.6	50.4
1987~1991	-1,817.4	4,061.3	3,508.6	-	115.8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 年度.

1972~1976년과 비교하여 1977~1982년의 外國人 直接投資 流入額의 규모는 新規投資가 53%, 總投資가 18% 감소하였다. 1977~1982년에 外國人 直接投資가 부진하였던 이유로는 朴正熙 大統領 사망에 따른 1980년대 초의 政治的 不安定과 經濟不況을 들 수 있다. 그 후 1982년부터 直接投資 流入額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8년까지 꾸준히 성장

하였다⁵⁾. 이는 國內 景氣恢復에 힘입은 投資環境의 改善과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986~1988년의 年間 GNP 成長率은 12%를 웃돌았으며, 1960년대 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赤字를 기록했던 經常收支도 1986년에는 黑字로 돌아서 1988년에는 그 규모가 140億달러에 이르렀다⁶⁾. 이렇게 유리한 經濟狀況은 國內 投資環境을 크게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外國人 投資者들로 하여금 韓國에 投資하도록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그 동안의 經濟發展과 이에 따른 國內 企業의 경쟁력 향상은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政府 政策의 전환을 초래하였다. 1984년에 政府는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制限方式을 許容業種列舉方式(positive list system)에서 制限業種列舉方式(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고 制限業種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韓國 企業과 合作投資를 하거나 外國人 持分이 50% 미만인 경우 특정 금액보다 적은 直接投資는 자동적으로 認可해 주는 自動認可制度를 導入하였고, 外國人 投資者의 持分所有 비율이 政府의 승인없이 관련 당사자들간의 相互 同意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利益 및 元金の 本國 송환을 보장하였다. 1987년에는 自動認可 範圍를 확대하였으며 1991년에는 申告制를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外國人 直接投資는 신고만으로도 실행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는 申告制度를 원칙으로 하여 法律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認可를 받도록 하였다. 1993년에는 外國人 投資開放 5開年計劃 豫示制를 채택하여 向後 5년 동안의 外國人 投資制限業種에 대한 自由化 計劃을 제시하였다.

5) 1986년은 제외. 1986년도 外國人 直接投資의 감소는 주로 政治的 不安定에 기인하는 것이다.

6) 이는 1988년 GNP의 약 8.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經常收支는 1990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러한 外國人 投資 自由化 措置와 더불어 政府의 승인을 받고 국내에 진입한 外國人 投資企業에게 주어지던 租稅支援助도 대폭 축소되었다. 1983년까지는 일단 外國人의 國內 直接投資가 승인되면 그 投資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法人所得稅가 5년 동안 완전히 면제되었으며 그 후 3년간은 50%가 감면되었다. 또한 化學, 金屬, 造船, 電氣 및 電子, 機械 등과 같은 特定部門에 대해서는 輸入資本財에 대한 關稅減免 등 추가적인 租稅支援助이 있었다. 그러나 1984년부터는 輸出 또는 輸入代替事業 등 韓國 經濟에 특별히 필요한 부문에만 租稅減免 惠澤을 부여하였으며, 감면 기간도 총 8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다⁷⁾. 그 후 1991년부터는 輸出 自由地域 入住業體나 高度技術隨件事業을 영위하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만 租稅減免 措置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法人稅가 완전히 면제되는 기간도 3년으로 줄었고 50%의 租稅減免 惠澤을 받는 기간도 2년으로 축소되었다.

1988년까지 크게 증가하던 外國人 直接投資는 계속된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후 2년 동안 4億 8千萬달러나 감소하였다. <表 II-1>에는 1991년에 直接投資 流入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네덜란드의 Aramco社가 쌍용정유와의 합작을 위해 대규모 投資를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 한 건을 제외하면 오히려 1989년보다 더 적은 규모이다. 1980년대 말부터 外國人 投資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높은 賃金과 빈번한 勞使紛糾로 인해 韓國의 投資環境이 惡化되었기 때문이다. <表 II-3>은 최근 韓國의 直接投資 流入額의 규모, 賃金水準 및 地價를 다른 東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이 表는 낮은 賃金

7) 1984년부터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만 租稅減免 惠澤을 부여하였다. 첫째, 輸出 또는 輸入代替産業으로서 國際收支 改善에 현저히 이바지하는 사업 둘째, 高度技術 또는 대규모 資本 隨件事業 셋째, 在外 國民의 投資事業 넷째, 輸出自由地域 입주업체 다섯째, 中小企業 우선 육성업종, 기타 外國人 投資 유치를 위해 租稅減免이 불가피한 사업.

水準과 地價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보다 더 많은 外國人 投資를 誘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3년에는 韓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流入額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外國人 投資開放 5開年計劃 豫示制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表 II - 3〉 生産費用과 外國人 直接投資 規模의 比較

	外國人 直接投資 (1988~1992) (10億달러)	賃金(1992) (달러/月)	地價(1992) (달러/m ²)
韓 國	5.5	1,023	205(남동) 148(신화)
臺 灣	9.1	1,078	23~110(민용)
말레이시아	24.7	255	43~75(요호루바루)
泰 國	30.4	162	50~75(나바나콘)
中 國	87.6	43	28(텐진) ¹⁾

註: 1) 賃賃.

資料: 經濟企劃院 外, 『新經濟의 國際化 戰略 細部推進 對策』, 1993.

나. 韓國 經濟에서 外國人 直接投資가 차지하는 比重

1980년대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外國人 直接投資가 韓國 經濟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직 상당히 낮다. 〈表 II - 4〉는 주요국의 國內 固定資本形成에 있어서 外國人 直接投資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인데 韓國의 경우 이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다. 1986년부터 4년 동안 外國人의 對韓 直接投資는 韓國의 固定資本形成에 1.6%밖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 비율은 35.2%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英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액은 國內 固定資本形成의 12.3%를 차지하였다. 홍콩과 美國의 동 비율은 각각 19.1%, 6.7%였다. 이 表에서 外國人 直接投資의 중요성이 韓國보다 낮게 나타난 국가는 日

본뿐이다. 日本의 경우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純直接投資 유입액이 負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말 外國人 直接投資 殘額의 對GDP 比重도 日本이 0.6%로 가장 낮고 韓國이 2.1%로 그 다음이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同 比率이 모두 5%를 넘었으며, 특히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에서는 20%를 넘었다.

〈表 II -4〉 外國人 直接投資의 重要性

(單位: %)

	外國人 直接投資(FDI)/總國內固定資本形成				FDI잔액/ GDP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89	1989
日 本	0.1	0.05	0.1	-0.01	0.6
英 國	7.3	8.4	5.4	12.3	16.2 ¹⁾
美 國	0.9	2.0	3.0	6.7	7.3
香 港	5.9	4.2	6.9	19.1	22.2
韓 國	1.9	0.4	0.5	1.6	2.1 ¹⁾
싱 가 포 르	15.0	16.6	17.4	35.2	91.7
말 레 이 시 아	15.2	11.9	10.8	9.6	27.7 ²⁾
인 도 네 시 아	11.6	2.4	1.0	2.3	9.3
臺 灣	1.4	1.2	1.5	3.6	5.5 ¹⁾
泰 國	3.0	1.5	3.1	4.9	7.0

註: 1) 1988년.

2) 1987년.

資料: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2*.

다. 外國人 直接投資의 産業別 構成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非製造業部門에 대한 外國人 投資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外國人 直接投資는 製造業部門, 특히 政府가 선정한 一部 製造業部門에 집중되었다. 〈表 II -5〉에 의하면 1981년 말까지 유입된 外國人 直接投資의 약 74%가 製造業部門에 投資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纖維 및 衣類, 電氣 및 電子, 그리고 化工部門에 投資된 금액은

外國人 直接投資 總額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非製造業 中에서는 宿泊業이 유일하게 總外國人 投資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表 II - 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産業別 構成

(單位: %)

産 業	1962~1981	1982~1986	1987~1991	1992	1993	1962~1993
農 林 水 産 業	0.79	0.15	0.11	0.09	0.01	0.22
鑛 業	0.34	0.24	0.10	0.16	0.00	0.16
製 造 業	74.47	52.66	69.17	72.45	50.45	65.97
食 品	3.13	4.99	4.24	5.25	3.77	4.21
纖 維 및 衣 類	10.43	0.94	1.26	2.73	0.44	2.78
化 工	18.05	6.68	16.73	24.55	23.09	16.58
醫 藥	1.11	4.24	3.44	6.94	2.17	3.34
石 油	4.54	0.30	10.01	0.00	1.98	6.02
金 屬	5.36	1.22	1.16	1.92	1.45	1.96
機 械	6.41	3.05	7.41	4.28	4.77	6.06
電 氣 및 電 子	14.67	14.16	14.26	7.45	4.33	12.84
運 送 用 器 機	4.42	14.44	7.64	4.47	4.22	7.60
서 비 스 業	24.40	46.95	30.62	27.31	49.54	33.66
貿 易 業	0.02	0.24	2.87	9.44	8.82	3.06
宿 泊 業	12.85	38.01	14.67	3.56	9.84	16.71
金 融 業	5.58	3.77	7.38	4.39	5.46	6.09
保 險 業	0.16	0.03	3.16	0.44	0.83	1.73
總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表 II - 1〉과 同一.

精油 및 石油化學産業과 같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外國人 直接投資의 대부분은 저렴한 勞動力의 이점을 살린 輸出指向의 投資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外國人 投資者들이 輸入 材料와 先進技術 그리고 韓國의 값싼 勞動力을 결합하여 製品을 生産한

후 生産品을 다른 국가로 輸出하는 형태가 당시의 對韓 外國人 直接投資의 전형이었음을 의미한다⁸⁾.

1982~1986년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宿泊業에 대한 대규모 外國人 投資 유입이 발생하였다. 宿泊業에 대한 外國人 投資 증가는 外國人 直接投資 중 製造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52.7% 수준까지 감소시켰으나, 1980년대 말부터 宿泊業에 대한 外國人 投資가 정체되면서 製造業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는 製造業 중 纖維 및 衣類, 金屬部門의 비중이 감소된 데 반해 化工, 醫藥, 機械, 電氣 및 電子, 運運用 器機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되었거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韓國의 産業構造 變化(勞動集約的인 부문에서 資本 및 技術集約的인 부문으로의 전환)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投資者 居住地國別 外國人 直接投資의 構成

1960년대 중반까지는 美國으로부터의 投資가 外國人 直接投資 總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日本의 韓國에 대한 直接投資가 급속하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1965년 韓國과 日本의 外交關係가 정상화된 후 兩國 政府가 긴밀한 經濟協力에 합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1970년대에는 日本이 최대의 投資國으로 부상하여 1972~1981년까지 韓國에 유입된 總直接投資의 약 58%를 점유하였다 (<表 II-6> 참조).

8) 朴乙鏞(1979)은 1979년 韓國에서 營業活動을 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外國人의 對韓 直接投資를 유발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저렴한 人件費”로 外國人 直接投資의 33%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 동기는 “市場 確保”로 外國人 直接投資의 23%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外國人 直接投資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美國과 유럽국가들로부터의 對韓 直接投資 比重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日本의 對韓 直接投資가 美國과 유럽에 비해 低賃金の 이점을 취할 수 있는 부문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어 최근의 賃金上昇으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62년부터 1993년까지의 外國人 直接投資 流入額 중 약 70%는 美國과 日本에 의해 투자된 것이며, 그 이외에 對韓 外國人 直接投資의 2% 이상씩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네덜란드와 獨逸, 스웨덴, 英國, 홍콩, 프랑스 등이다.

〈表 II -6〉 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者 居住地國別 構成¹⁾

(單位: %)

	1962~1971	1972~1981	1982~1986	1987~1991	1992	1993	1962~1993
美 國	45.2	23.2	32.9	26.0	42.4	32.6	29.1
日 本	36.8	58.0	49.6	37.7	17.3	27.4	39.8
홍 콩	2.2	3.8	3.6	1.9	1.1	7.2	2.9
獨 逸	1.0	2.1	1.5	5.3	13.5	3.4	4.6
英 國	4.0	1.3	1.9	3.2	2.6	6.8	3.0
프 랑 스	0.2	0.9	1.6	2.7	3.3	3.8	2.4
네덜란드	2.3	1.7	1.1	13.3	4.9	12.6	8.7
스 웨 덴	0.0	1.9	3.7	3.9	4.1	0.7	3.2
합 계	91.8	92.9	96.1	94.0	89.2	94.4	93.8

註: 1) 國別 對韓 直接投資 / 對韓 外國人 直接投資 總額.
 資料: 〈表 II -1〉과 同一.

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가. 海外直接投資의 變化推移

韓國 政府는 1980년대 중반까지 강력한 外國換管理制度를 실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海外直接投資 유출에도 강력한 통제를 가하였다. 韓

國企業들은 海外資源의 開發이나 輸出市場의 擴大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海外直接投資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중반까지 연간 海外直接投資 流出額은 2億달러에도 못 미쳤었다(〈表 II-7〉과 [圖 II-2] 참조).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海外直接投資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연간 유출액이 9億 6千萬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해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액 8億달러를 능가하는 것이며 그

〈表 II-7〉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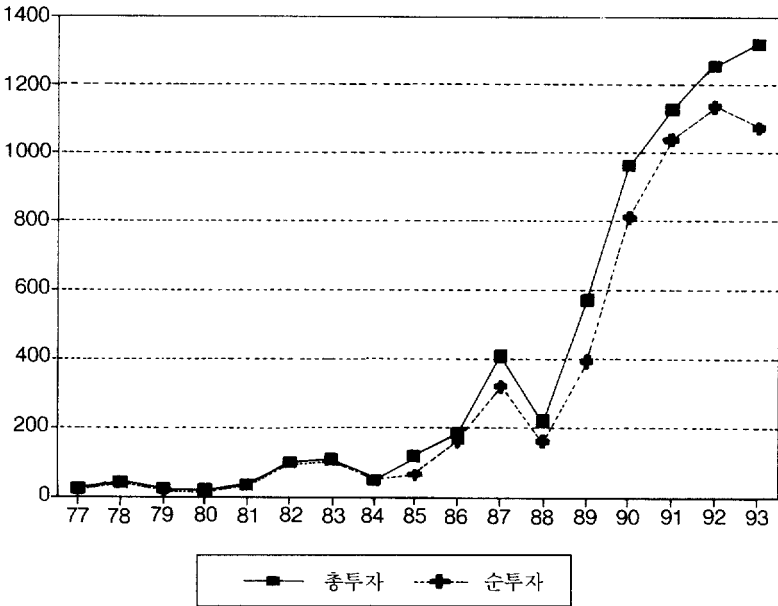
(單位: 百萬달러, %)

年 度	總 投 資		純 投 資 ¹⁾	
	金 額	增 減 率	金 額	增 減 率
1968~1976	58.19		52.85	
1977~1981	136.95	135.35	116.26	119.98
1982~1986	559.38	308.46	476.01	309.44
1987~1991	3,288.55	487.89	2,727.79	473.05
1977	21.22		18.73	
1978	41.84	97.17	39.54	111.11
1979	21.05	-49.69	16.40	-58.52
1980	17.76	-15.63	12.80	-21.95
1981	35.08	97.52	28.79	124.92
1982	100.84	187.46	97.51	238.69
1983	108.92	8.01	102.59	5.21
1984	50.19	-53.92	48.18	-53.04
1985	115.56	130.25	66.54	38.11
1986	183.88	59.12	161.18	142.23
1987	410.51	123.25	320.90	99.09
1988	223.76	-45.49	164.10	-48.86
1989	569.59	154.55	392.39	139.12
1990	959.33	68.42	813.19	107.24
1991	1,125.36	17.31	1,037.22	27.55
1992	1,255.09	11.53	1,133.73	9.30
1993	1,317.70	4.99	1,071.68	-5.47
1968~1993	6,615.88		5,578.31	

註: 1) 純投資 = 總投資 - 清算, 減資 및 貸付金 回收 등에 의한 투자 감소분.

資料: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海外投資統計年報』, 1994.

〔圖 II - 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후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은 계속 정체된 반면 海外直接投資 유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0년대 말의 海外直接投資 증가는 政府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規制緩和과 빠른 賃金上昇으로 인한 國內 投資環境의 악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經常收支는 1986년에 黑字로 돌아서 1986~1989년까지 그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대규모 經常收支 흑자와 經濟好況으로 인해 通貨管理上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韓國 政府는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는 1百萬달러 미만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해 自動承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1988년부터는 留保利益에 의한 海外直接投資에 대해서도 自動承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負債-株式「스왑」(debt-equity swap) 去來 및 海外 不動產에 대한 投資도 허용되었다. 1989년에 2百萬달러로 상향 조정된 自動承認의 制限範圍는 그 후 1千萬달러로 확대되었다. 1991년에는 自動

承認의 범주를 벗어나는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規制方式이 許容業種列舉方式에서 制限業種列舉方式으로 전환되었고 동시에 許容業種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勞使紛糾와 賃金上昇으로 인한 國內 投資環境의 악화도 韓國人 投資者들로 하여금 外國人 投資者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 投資機會를 찾도록 하는 데 한 몫을 하였다. 韓國의 많은 製造業體들, 특히 衣服, 가죽 및 毛皮, 신발 生産業體의 경우 1980년대 말에 이미 그들의 製造工場을 泰國,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하였고 최근에는 中國으로의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海外直接投資의 産業 및 投資對象國別 構成

1980년대 중반까지의 海外直接投資는 크게 두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海外資源의 開發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중동지역 등 開發途上國에의 投資로서 鑛業이나 林業에 대한 投資가 주종을 이루었다. 다른 하나는 市場開拓 또는 貿易障壁 回避를 위해 北美와 유럽

〈表 II-8〉 海外直接投資의 産業別 構成比

(單位: %)

産 業	1968~1981	1982~1986	1987~1991	1992	1993	1968~1993
鑛 業	0.83	50.47	19.31	11.96	10.98	18.35
林 業	18.10	6.31	1.24	0.15	0.35	1.78
水 産 業	5.44	1.11	2.96	2.07	0.59	2.24
製 造 業	19.21	24.90	48.77	51.90	40.70	44.87
建 設 業	15.79	2.96	1.21	0.04	1.53	1.63
運 輸 業	1.40	0.20	0.44	0.78	0.46	0.52
貿 易 業	19.72	9.92	17.53	24.16	31.05	20.90
不 動 産	11.13	1.02	0.68	2.92	4.66	2.24
其 他	8.37	3.12	7.86	6.01	9.68	7.48
總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表 II-7〉과 同一.

에 행해진 것으로서 주로 製造業이나 貿易業에 대한 投資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海外資源 開發을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 등 低開發國에 대한 投資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그 동안 축적된 國內 技術과 低開發國의 低賃 勞動力의 결합을 추구하는 製造業部門의 對아시아 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는 衣服, 가죽 및 毛皮, 신발, 고무製品 및 日用雜貨部門을 중심으로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中國 등에 대한 投資가 빠르게 증가되었다. 또한 國內 企業의 競爭力이 향상됨에 따라 市場開拓 또는 先進國의 貿易障壁 回避를 목적으로 하는 製造業이나 貿易業部門의 對先進國 投資도 크게 증가하였다.

〈表 II - 9〉 海外直接投資의 投資對象國 構成比

(單位: %)

	1968~1981	1982~1986	1987~1991	1992	1993	1968~1993
아 시 아	38.77	12.53	31.59	44.28	41.46	34.56
中 東	13.33	19.03	7.38	6.00	6.50	8.10
北 美	20.34	39.35	44.70	31.20	29.30	37.90
中 南 美	3.08	1.37	4.60	2.87	3.37	3.71
유 럽	4.22	10.76	7.10	11.48	14.39	9.61
아 프 리 카	13.45	0.33	1.67	2.31	2.34	2.16
오세아니아	6.80	16.62	2.96	1.86	2.64	3.96
總 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資料: 〈表 II - 7〉과 同一.

1991년 全國經濟人聯合會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韓國 企業이 外國에 投資하는 동기는 〈表 II -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投資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東아시아나 다른 低開發國家에 投資한 企業들은 ‘生産費 節減’을 海外直接投資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企業成長 戰略’과 ‘市場開拓’을 들었다. 한편 先進國에 投資한 경우에는 ‘企業成長 戰略’, ‘輸入規制 回避’, ‘市場開拓’ 등이 주

요한 동기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生産費用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賃金水準과 貿易障壁이 海外直接投資에 영향을 주는 主要因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表 II - 10〉 韓國人の 海外直接投資 動機

(單位: %)

	北美, 유럽	東南 아시아	中國, 西南亞, 中東, 아프리카	中南美, 大洋洲	平 均
生産費 節減	7.6	33.2	26.7	26.4	27.1
市場開拓	9.3	21.1	23.8	17.4	23.1
輸入規制 回避	18.2	7.8	2.9	27.3	12.6
資源確保	4.5	8.6	9.5	5.0	7.4
先進技術 習得	6.0	—	—	2.5	1.3
遊休施設 移轉	—	4.7	6.7	5.0	4.6
企業成長 戰略	22.7	21.6	27.6	12.4	20.8
其他	1.5	3.0	2.9	4.1	3.1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全國經濟人聯合會, 『製造業部門의 海外投資 收益性에 대한 調査』, 1991.
金南斗(1991)에서 재인용함.

Ⅲ.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制度

本章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우리나라의 租稅制度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外國人 投資企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課稅原則을 검토하고 나서, 제2절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正當한 課稅權을 확보하기 위해, 즉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外國人 投資企業의 부당한 所得移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移轉價格課稅制度를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外國人 投資企業이 과연 韓國 政府에 正當한 수준의 租稅를 납부하고 있는지의 여부, 즉 外國人 投資企業의 稅負擔이 다른 國內 企業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1.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韓國의 課稅制度

外國人이 國內에 資本을 투자하여 內國法에 따라 企業을 設立하였을 경우 이 企業(이하 ‘外國人 投資企業’)은 法人稅法에 의해 內國法人으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內國人 所有企業에 대한 租稅制度가 外國人 投資企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人 投資企業이 國內에서 발생한 이익을 外國人 株主에게 배당할 경우 이 配當所得에 대해서는 外國人 株主의 居住地國도 課稅할 권리가 있으므로 二重課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各國은 租稅條約을 통해서 발생 소득의 源泉地國이 外國人 株主에게 배당된 所得에 대해 課稅하는 源泉徵收稅率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韓國의 경우 租稅條約상의 규정이 內國法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租稅條約상에 명시된 外國人 株主에 대한 配當所得 源泉徵收稅率이 國內法상의 稅率과 다를 경우 外國人 株主에 대한 배당에 있어서는 租稅

條約상의 稅率이 적용된다. 韓國과 租稅條約을 맺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國內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租稅條約상의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國內法상의 稅率보다 낮다.

둘째, 外資導入法에 따르면 國家經濟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外國人 投資의 경우 法人稅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內國人 所有法人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企業集團의 경우 동일집단 내의 한 企業에서 발생한 所得을 다른 企業에서 발생한 所得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한 企業의 課稅標準을 축소시키고 다른 企業의 課稅標準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때 임의적으로 課稅標準이 縮小된 企業에 대한 課稅權을 갖는 국가와 課稅標準이 增加한 企業에 대한 課稅權을 갖는 국가가 다르면, 이러한 企業間의 임의적인 所得移轉은 한 국가의 租稅收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多國籍 企業集團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한 국가의 課稅所得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移轉價格課稅制度가 있다.

移轉價格課稅制度는 外國人の 持分이 일정 수준 이상인 外國人 投資 企業과 海外에 소재한 企業의 持分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는 內國人 所有企業에 適用된다. 移轉價格課稅制度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本節에서는 移轉價格課稅制度를 除外한 外國人 投資 企業에 대한 課稅制度를 法人稅法과 租稅條約, 外資導入法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韓國의 法人稅率은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1993년까지는 課稅標準이 1億원 이하인 경우 20%의 稅率이, 1億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4%의 稅率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法人稅額의 7.5%에 해당하는 住民稅가 부과되어 法人의 실질적인 總租稅負擔은 각각 21.5%와 36.55%이었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에 法人稅率이 18%, 32%로 인하됨에 따라 總稅負擔은 각각 19.35%, 34.4%로 낮아졌다.

證券 讓渡差益은 法人稅 계산시 法人所得에 합산되어 과세되며, 不動

産 거래로부터 발생한 讓渡差益에 대해서는 法人稅에 추가하여 ‘特別附加稅’를 부과하고 있는데 稅率은 25%이다. 그러나 그 동안 韓國 政府가 外國人 投資企業의 不動産 投資를 엄격히 제한해 온 까닭에 不動産 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加稅가 부과되는 外國人 投資企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993년까지는 韓國證券去來所에 상장되지 않은 非上場法人이 配當可能 利益의 40%를 초과하여 유보할 경우 그 超過留保分에 대하여는 25%의 超過留保所得稅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부터는 配當可能 利益의 50%와 資本金의 10% 중에서 큰 금액을 초과하는 留保所得에 대해 超過留保所得稅가 부과되고 稅率은 15%로 낮아졌다. 外國人 投資企業은 대부분 非上場企業이므로 超過留保所得稅의 과세대상이 된다.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租稅條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5~20%의 범위에 속해 있다. 韓國과 租稅條約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보통 20%이나 大株主 및 韓國證券去來所에 상장되지 않은 企業의 配當에 대해서는 25%의 稅率이 적용된다.

그 이외에 法人의 營業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租稅로서 財産稅가 課標에 대해 0.3% 부과되며⁹⁾, 正常地價上昇率을 초과하는 遊休土地 保有者에게는 土地超過利得稅가 부과된다¹⁰⁾. 그러나 外國人 投資企業은 事業활동에 필요한 것 이외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土地超過利得稅를 납부하는 外國人 投資者나 外國人 投資企業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韓國의 租稅制度를 일반적으로 高稅率國으로 분류되고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表 Ⅲ-1>과 같다.

9) 일부 都市地域에 대해서는 다른 稅率이 적용된다.

10) 1994년 7월 土地超過利得稅法의 일부 조항이 憲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土地超過利得稅는 유명무실화되었다.

〈表 III-1〉 OECD 會員國과 韓國의 企業課稅制度 比較 (1991年)

(單位: %)

國 家	法人稅 ⁹⁾	資産讓渡差益에 대한 課稅制度 ⁴⁾	財産稅率
濠洲	39	C	—
오스트리아	39	C, D	1+0.5 부가세
벨기에 ⁸⁾	39	C(5년 미만 보유), 19.5%(5년 이상 보유), D	—
캐나다 ⁸⁾	41.74 (35.74) ¹⁾	양도차익의 75%	0.2
덴마크	38	일반적으로 면세	—
핀란드 ⁸⁾	40.2	C ⁶⁾ , D	—
프랑스	34 42 ³⁾	2년 미만 34% 2년 이상 19% 또는 25% ⁵⁾	—
獨逸	56.5 44.3 ³⁾	C, D	0.6
그리스	46(40) ²⁾	C	—
아이슬란드	45	C, D	1.45
에이레	43(10) ¹⁾	보유기간 <u>세율</u> 3년 미만 50% 3~6년 35% 6년 초과 30%, D	—
이탈리아	47.83	C	—
日本 ⁸⁾	49.98	C ⁶⁾	—
룩셈부르크	39.39	C, D	0.5
네덜란드	35	C, D	—
뉴질랜드	33	면세	—
노르웨이	50.8	C, D	0.3
포르투갈	39.6	C, D	—
스페인	35.34	C, D	—
스웨덴	30	C	—
스위스	13.15~38.36	C ⁶⁾	0.439 ⁷⁾
터키	49.2	C, D	0.3~0.6
英國 ⁸⁾	34	C, D	—
美國 ⁸⁾	38.3	C, D	—
韓國	36.65	C ⁶⁾	0.3

註: 1) 괄호 안의 수치는 製造業에 대한 稅率임.

2) 아테네 증권시장에 상장된 企業에 대해서는 40%의 稅率이 적용됨.

3) 配當所得에 대한 稅率.

4) C = 法人稅率과 같음. D = 再投資할 경우 課稅延期.

5) 再投資하지 않을 경우에는 34%.

6) 不動産 讓渡差益에 대해서는 別途稅率 적용.

7) 취리히의 경우(聯邦稅, 州稅, 市稅 및 教會稅 포함).

8) 일정 규모 이하의 企業에 대해서는 별도의 稅率이 적용됨.

9) 地方稅 포함.

資料: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1991.

金裕燦,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現況 및 改編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OECD 국가들의 法人稅率은 대체로 30~50% 범위 내에 있으며 평균 약 40% 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資產讓渡差益이 法人所得稅의 課稅標準에 합산되며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5~20% 정도이다. 이 表에 의하면 韓國의 企業課稅制度가 일반적으로 高稅率國으로 알려져 있는 OECD 회원국의 制度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法定法人稅率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보다 낮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와 같이 韓國의 法定法人稅率이 高稅率國인 OECD 회원국들에 거의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韓國이 低稅率國으로 분류되었던¹¹⁾ 이유는 國內 投資에 대한 각종 租稅支援制度¹²⁾와 外資導入法에 따른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制度에서 기인한다. 1983년까지는 모든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설립 후 5년 동안 法人稅가 전액 감면되었고 그 후 3년 동안은 50%가 감면되었다. 이러한 租稅減免制度는 비교적 높은 法定稅率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을 低稅率國에 포함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84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서 租稅減免制度의 對象 範圍 및 減免期間이 축소됨에 따라¹³⁾ 현재 外資導入法에 의한 租稅減免은 高度技術隋件事業을 영위하는 外國人 投資企業과 輸出自由地域 入住業體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事業開始年度와 그 다음 年度부터 3년 동안은 法人稅가 전액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50%만 감면된다. 이처럼 租稅減免政策이 변화됨에 따라 1982~1984년에는 80~90%에 달했던 外國人 投資企業의 總法人稅 納付額에 대한 租稅減免額의 비중이 1985~1987년에는 약 40%로 감소되었다¹⁴⁾. 이 비중은 이후 계속 줄어들어 1989~

11) Hines & Rice(1991)는 韓國을 法定法人稅率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實效稅率이 낮은 국가로 분류하였다.

12) 租稅支援制度의 자세한 내용은 尹建永·林周瑩(1993) 참조.

13)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制度의 변화에 대해서는 財務部와 韓國產業銀行에서 발간한 『韓國外資導入 30年史』(1993) 참조.

14) 이 자료는 全產業部門에 대한 것이다. 이광철(1991) 참조.

1991년 3년 동안 製造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額(779 億원)은 外國人 投資企業의 總法人稅 納付額(8,481億원)의 9.2%에 불과하였다¹⁵⁾.

2. 移轉價格課稅制度

韓國 政府는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移轉價格 規制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外國人 直接投資가 크게 증가되고 政府의 규제가 더욱 완화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크게 고조되어 國際租稅部門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는 1988년 稅法改正을 통해서 移轉價格稅制를 도입하였다¹⁶⁾.

1988년 稅法改正 이전에도 韓國 政府는 ‘不當行爲計算의 否認’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法人稅法 제20조에 의거하여 移轉價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었다.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間의 거래에 대하여 正常去來價格(또는 獨立企業價格)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條項은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 제2항에 예시된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不當行爲 否認要件을 정의함에 있어서 正常去來價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규정만으로는 國際적으로 통용되는 移轉價格稅制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政府는 1988년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 제4항을 신설하여 OECD의 移轉價格에 대한 報告書(OECD(1979))에서 권고하는 移轉價格決定方法을 도입했는데 그 후부터 韓國의 移轉價格稅制가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15) 이 자료는 製造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것으로 國稅廳에서 제공한 것이다.

16) 1989년 1월 1일부터 施行.

같이 韓國의 移轉價格稅制는 法人稅法 제20조(不當行爲計算의 否認)와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法人의 不當한 行爲 또는 計算)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國稅廳은 이들 조항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990년에 「移轉價格 規制를 위한 事務處理規程」과 「移轉價格稅制 運營에 관한 規程」의 두 가지 內部指針을 제정하였다. 이 두 가지 규정에는 獨立企業價格 算定方法이 명시되어 있으며 資料提出義務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國稅廳은 1990년 3월 國稅廳 告示 제1990-4호와 제1990-9호를 통해서 海外特殊關係企業의 決算書類 제출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온 韓國의 移轉價格課稅制度는 OECD가 추천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가. 移轉價格稅制의 適用對象

韓國의 移轉價格稅制의 적용대상 企業은 海外特殊關係企業과 거래를 행한 모든 法人이다. 여기서 ‘法人’이라 함은 法人稅法 제1조에 규정된 納稅義務을 지고 있는 모든 法人을 뜻하는 것으로 內國 法人과 국내에 固定事業場(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있는 外國 法人이 모두 포함된다. 美國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實質的인 所有 또는 支配’ 관계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企業間的 특수관계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소유권과 지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였다¹⁷⁾.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特殊關係者’란 法的인 소유권을 통하여 納稅者와 특수한 관계를 맺은 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예, 出資者의 친척, 出資者의 사용인¹⁸⁾ 등)에 의해 納稅者와 특수한 관계를 맺은 者도

17) Weizman(1992)은 韓國의 移轉價格稅制와 美國의 移轉價格稅制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18) 임원, 이사 등.

포함한다.

그러나 國稅廳은 移轉價格稅制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移轉價格稅制의 적용대상인 海外特殊關係企業의 범위를 상당히 좁혀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1월 國稅廳 訓令 제 1061호와 제 1062호를 제정하였다¹⁹⁾. 이들 훈령의 목적은 納稅者로 하여금 위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른 納稅者의 부담과 移轉價格操作에 대한 稅務調査時 발생하는 租稅當國의 관리비용을 最小化하기 위한 것이다. 이 훈령들에서는 海外特殊關係者의 범위를 (1) 內國法人의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の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外國法人, (2) 內國法人이 外國法人의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の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外國法人, (3) 韓國에 支社를 두고 있는 外國本社의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の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海外의 다른 外國法人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훈령에 의하면 移轉價格課稅制度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海外特殊關係企業과 韓國 子會社間에 이루어진 거래(거래일 현재 外國法人이 內國法人의 總發行株式 또는 總投資金額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海外特殊關係企業과 韓國 母會社間에 이루어진 거래(거래일 현재 內國法人이 外國法人의 總發行株式 또는 總投資金額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移轉價格의 決定

대상 법인과 海外特殊關係企業間의 거래에 대한 移轉價格이 獨立企業

19) 「移轉價格 規制를 위한 事務處理規程」과 「移轉價格稅制 運營에 관한 規程」.

價格과 다를 경우 政府는 獨立企業價格 原則에 따라 移轉價格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移轉價格(transfer price)’이라 함은 對象 法人과 海外特殊關係企業間에 행해지는 在庫資產의 販賣 또는 買入, 用役의 제공, 또는 기타 거래시²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獨立企業價格(arm's length price)’이란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市場價格으로서 對象 法人과 海外特殊關係企業 사이에 거래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資產이나 用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特殊關係가 없는 獨立企業間에 거래된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1) 在庫資產의 賣買

法人稅法 施行令 제85조 제3항에 의하면 在庫資產에는 完製品, 半製品 및 在工品, 原材料, 貯藏品 등이 포함된다. 「移轉價格稅制의 運營에 관한 規程」(이하 ‘규정’) 제7~9조에는 在庫資產의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네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1) 比較可能 第3者 價格法, (2) 再販賣價格法, (3) 原價加算法, (4) 其他 合理的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그것이다. 國稅廳 告示 제1990-4호는 이들 각 방법에 대해 在庫資產의 讓渡 또는 買入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가) 比較可能 第3者 價格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CUP)

韓國 法規에 명시된 比較可能 第3者 價格法은 OECD의 1979년 권고와 유사하다. 國稅廳 告示(이하 ‘고시’) 제1990-4호에 의하면 比較可能 第3者 價格法에 의한 獨立企業價格은 대상 제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20) 사실상 課稅年度 중의 所得創出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移轉價格稅制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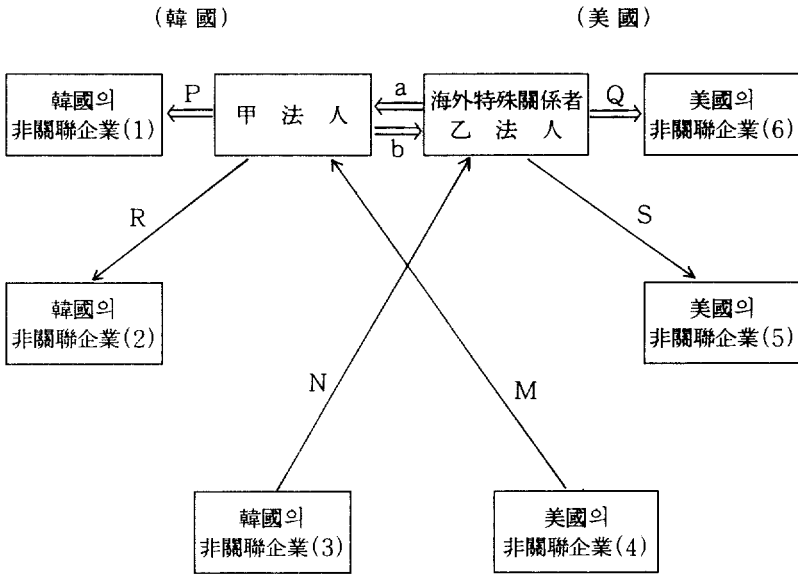
製品이 비슷한 조건하에서 독립된 제3자간에 거래되었을 경우(이하 ‘比較可能去來’)에 책정되는 가격을 뜻한다. 比較可能去來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1) 特殊關係가 없는 賣買者 사이의 거래 즉, 당해 企業 또는 海外特殊關係企業과 제3자간의 거래, 또는 독립된 제3자들간의 거래일 것, (2) 비교되는 有形資產이 海外特殊關係企業과의 거래에 관련된 有形資產과 같거나 유사한 것일 것, (3) 독립된 제3자들간의 거래조건이 移轉價格課稅制度의 적용대상이 되는 韓國 企業과 海外特殊關係企業間的 거래조건과 유사해야 할 것.

대상 거래와 比較可能去來 사이에 수량화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價格差異를 조정한 후의 價格을 獨立企業價格으로 간주한다.

나) 再販賣價格法(Resale Price Method : RPM)

再販賣價格法에 따르면 獨立企業價格은 特殊關係企業이 독립된 제3자에게 당해 在庫資產을 再販賣한 價格에서 통상의 利潤을 차감한 것이다. ‘고시’ 제1990-4호와 ‘규정’ 제8조는 이 방법에 따른 獨立企業價格算定方式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法人稅法 施行規則 제22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하는 ‘通常의 利潤’이라 함은 대상 法人이 海外特殊關係企業과 在庫資產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海外特殊關係企業이 특수관계가 없는 者에게 당해 在庫資產을 再販賣한 價格에 通常利益率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2) 通常利益率은 特殊關係企業間的 거래가 행해진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中 당해 거래에 관련된 買入者 또는 買入者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非關聯者가 당해 在庫資產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을 非關聯者로부터 買入하여 이를 다른 非關聯者에게 販賣(비교대상거래)할 경우, 同 比較對象去來에서 발생한 賣出總利益이 總賣出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通常利益率은 일정 기간 동안의 去來를 일괄하여 계산한 것으로 어느 시기, 어느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당해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와 가까운 時期의 分期, 半年, 또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실제 거래와 比較對象去來 사이에 買入者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여 通常利益率을 계산할 수 있다. ‘고시’ 제1990-4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韓國의 甲法人은 海外特殊關係企業인 美國의 乙法人(單獨所有 子會社)으로부터 각각 a와 b라는 價格에 在庫資產을 輸入, 輸出하고 있다. 甲法人은 동일한 在庫資產을 韓國의 非關聯企業 (1)에게 P라는 價格에 판매하였다. 乙法人은 동일한 在庫資產을 美國의 非關聯企業 (6)에게 Q라는 價格에 판매하였다. 甲法人은 美國의 非關聯企業 (4)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產을 M이라는 價格에 輸入하고 있다. 韓國의 非關聯企業 (3)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產을 N이라는 價格으로 乙法人에 輸出한다. 甲法人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產을 韓國의 非關聯企業 (2)에 R의 價格으로 販賣하며 乙法人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

産을 美國의 非關聯企業 (5)에 S라는 價格에 판매한다. 당해 在庫資産의 買入 및 販賣에 있어 甲法人과 乙法人에 의해 수행된 기능이 比較可能去來에서 買入者의 기능과 다르지 않고 甲法人과 乙法人의 去來條件이 比較可能去來의 조건과 유사하다면 甲法人이 乙法人에 輸出한 在庫資産의 獨立企業價格은 아래 (i)에 설정된 공식에 의해 계산되며 乙法人이 甲法人에 輸出한 在庫資産의 獨立企業價格은 아래 (ii)에 설정된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i) 韓國의 甲法人이 美國의 乙法人에 輸出하는 價格 b의 獨立企業價格 算出方法

$$\text{獨立企業價格} = Q - \text{通常의 利潤}$$

$$\text{通常의 利潤} = Q \times \text{通常利益率}$$

$$\text{通常利益率} = \frac{S - N}{S}$$

(ii) 韓國의 甲法人이 美國 乙法人으로부터 輸入하는 價格 a의 獨立企業價格 算出方法

$$\text{獨立企業價格} = P - \text{通常의 利潤}$$

$$\text{通常의 利潤} = P \times \text{通常利益率}$$

$$\text{通常利益率} = \frac{R - M}{R}$$

다) 原價加算法(Cost Plus Method: C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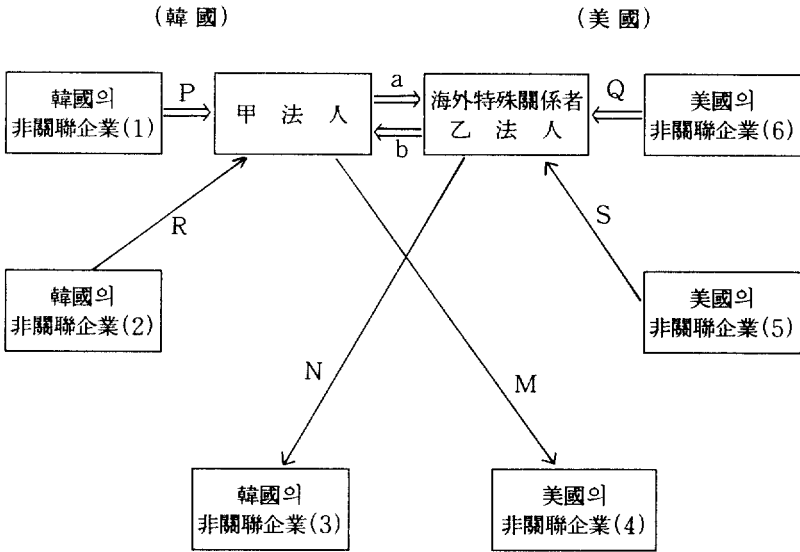
原價加算法에 따르면 獨立企業價格은 關係企業에 有形資産을 販賣하기 위해 당해 資産을 非關聯 供給者로부터 購入하거나 직접 製造하는 데 소요된 비용(原價)에 通常의 利潤을 더하여 계산된다. 再販賣價格法의 경우에는 買入者에 초점을 맞추어 獨立企業價格이 결정되는 반면 原價加算法에서는 당해 거래의 販賣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再販賣價格法은 資産 買入者의 당해 資産 再販賣價格은 알려져 있는 데 반해

販賣者의 당해 資産 購入費用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며, 原價加算法은 販賣者의 購入價格은 알려져 있으나 買入者의 再販賣價格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이용된다.

原價加算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1) 法人稅法 施行規則 제22조의 2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通常의 利潤은 당해 法人이 海外特殊關係企業과 在庫資産의 거래를 하고 그 去來의 販賣者가 買入 또는 製造를 통해 당해 在庫資産을 취득한 경우, 그 在庫資産의 買入 또는 製造原價에 通常의 利益率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당해 거래의 販賣者와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非關聯者가 買入 또는 製造를 통해 당해 在庫資産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産을 취득한 후 이를 獨立企業價格으로 非關聯者에게 販賣하였을 경우, 通常利益率은 동 比較對象 去來에서 발생한 賣出總利益의 總取得費用에 대한 비율이다. (3) 原價加算法下에서 通常의 利潤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와 比較可能去來의 買入者間에 수행되는 기능 등과 같은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原價加算法은 일반적으로 販賣者의 買入價格이 적절할 경우에 이용된다. 만약 당해 거래에서 販賣者가 獨立企業價格 이하로 당해 資産을 買入하였다면 이 買入價格은 原價加算法下에서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通常의 利潤을 계산하는 데 있어 取得費用으로 이용될 수 없다. 대신 이 買入價格은 法人稅法 施行規則 제2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比較可能 第三者 價格法에 의해 계산된 獨立企業價格을 반영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 '고시' 제1990-4호는 다음의 예를 통해서 原價加算法을 설명하고 있다.

韓國의 甲法人은 海外特殊關係企業인 乙法人에 a라는 價格으로 在庫資産을 輸出하고 b라는 價格으로 輸入하고 있다. 甲法人은 非關聯企業 (1)로부터 P라는 價格에 당해 在庫資産을 買入하였다. 甲法人은 美國의 非關聯企業 (4)에게 당해 資産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産을 M이라는 價格에 販賣하였다. 韓國의 非關聯企業 (3)은 乙法人으로부터 당해



在庫資産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産을 N이라는 價格에 수입하였다. 甲法人은 당해 在庫資産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産을 韓國의 非關聯企業 (2)로부터 R이라는 價格에 買入하였다. 乙法人은 당해 在庫資産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在庫資産을 美國의 非關聯企業 (5)로부터 S라는 價格에 買入하였다. 甲法人과 乙法人에 의해 수행된 기능 및 거래조건이 比較可能去來와 차이가 없다면 甲法人이 乙法人에 輸出한 價格 a에 대한 獨立企業價格은 아래 (i)에 설정된 공식에 의해 계산되며 甲法人이 乙法人에서 輸入한 價格 b에 대한 獨立企業價格은 아래 (ii)에 설정된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i) 韓國의 甲法人이 美國의 乙法人에 輸出한 價格 a의 獨立企業 價格 算出方法

$$\text{獨立企業價格} = P + \text{通常의 利潤}$$

$$\text{通常의 利潤} = P \times \text{通常利益率}$$

$$\text{通常利益率} = \frac{M - R}{R}$$

(ii) 韓國의 甲法人이 美國 乙法人으로부터 輸入한 價格 b의 獨立
企業價格 算出方法

$$\text{獨立企業價格} = Q + \text{通常의 利潤}$$

$$\text{通常의 利潤} = Q \times \text{通常利益率}$$

$$\text{通常利益率} = \frac{N-S}{S}$$

라) 其他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方法

기타 合理的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比較可能 第三者 價格法, 再販
賣價格法, 原價加算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獨立企業價格을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세 가지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준용하는 것이다. 그 중
再販賣價格法에 의하면 獨立企業價格은 非關聯者에게 販賣한 在庫資產
의 再販賣價格으로부터 通常의 利潤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된다. 이에 준
하여 特殊關係者로부터 買入한 財貨를 다른 特殊關係者를 통해 非關聯
者에게 再販賣하였을 경우 당해 財貨가 최종 非關聯者에게 販賣된 시점
의 가격에서부터 역산하여 獨立企業價格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比較可能 第三者 價格法, 再販賣價格法, 原價加算法을 병용하
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 방법은 당해 企業과 海外特殊關係者의 所得을 그 所得의 실현
에 기여한 비중에 따라 당해 企業과 海外特殊關係者에게 配分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에 따라 당해 法人과 海外特殊關係者間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關係企業
間에 거래된 製品의 買入, 製造 또는 組立과 관련하여 발생한 原價 및 費
用, (2) 關係企業間에 거래된 製品의 製造 또는 組立에 사용된 固定資產
의 가치, (3) 실현된 利潤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이
용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그것이다. 당해 法人과 海外特殊關係者間

의 利潤配分에 대한 기준은 당사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在庫資産 또는 기타 有形資産의 貸貸借

韓國의 移轉價格課稅制度는 有形資産의 貸貸借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在庫資産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즉, ‘貸貸料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非關聯者들이 결정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와 같은 在庫資産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 有形資産의 貸貸借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融資

‘고시’ 제1990-4호는 在庫資産에 적용되는 방법을 資金의 貸付와 借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融資去來에 대한 獨立企業價格을 당해 거래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수행된 非關聯者間의 거래에 적용되는 利率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貸付金額, 滿期, 通貨, 市場, 信用度 등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銀行과 같이 資金을 대부해 주는 것이 主機能인 金融業에 속하는 企業들의 경우 보통 比較可能第3者 價格法을 이용하여 獨立企業價格을 산정한다. 그러나 比較可能第3者 價格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資金調達費用에 通常의 利潤을 가산함으로써 獨立企業價格을 산정한다.

4) 用役의 提供

‘고시’ 제1990-4호에 의하면 在庫資産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用役に 대한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 만약 당해 거래와 같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있다면 그

比較可能去來에 대한 支給額이 比較可能 第三者 價格法을 이용하여 구한 獨立企業價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比較可能去來가 없는 경우에는 用役을 제공하는 데 실제로 발생된 原價에다 通常의 利潤을 가산하는 原價加算法을 이용하여 獨立企業價格을 구할 수 있다. ‘고시’ 제1990-4호는 海外特殊關係企業과의 주거래가 用役의 제공인 경우 당해 法人에 의해 제공된 본래의 用役 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經營, 管理 및 技術 用役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하에서 非關聯者間에 제공된 用役에 대해 지불된 금액이 당해 用役의 獨立企業價格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費用과 같은 요소들이 계산에 이용되며, 費用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모든 費用이 포함된다.

5) 無形資產

移轉價格課稅制度는 法人稅法 제55조 제1항 9호의 가목과 나목에 정의되어 있는 學術 또는 藝術上 著作物(영화필름 포함)의 著作權, 特許權, 商標權, 意匠, 模型, 圖面이나 비밀의 公式 또는 工程,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產이나 權利 그리고 產業上, 商業上 또는 科學上의 知識, 經驗 또는 熟練에 관한 情報 등의 無形資產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규정’에는 無形資產의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데 어떤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고시’ 제1990-4호는 有形資產에 적용되는 방법이 無形資產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有形資產의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들(比較可能 第三者 價格法, 再販賣價格法, 原價加算法 및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 無形資產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간혹 無形資產의 양도에 대한 獨立企業價格을 결정하는 데 이용될 比較可能 支給額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고시’ 제1990-4호는 당해 法人의 활동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特殊關係가 없는 者들간의 활동과 비교하는 방법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接近方法은 OECD의 지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된다.

다. 立證責任 및 資料提出의 義務

法人稅法 施行令 제46조 제5항은 納稅者에게 移轉價格決定과 관련된 資料를 提出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納稅者들은 그들의 거래가 獨立企業價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國稅廳의 獨立企業價格 조정이 임의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역시 이를 입증해야 한다.

1) 法人稅 申告時 添附書類

‘규정’에 따르면 海外特殊關係企業과 거래한 法人은 法人稅 申告書와 함께 다음의 서류들을 稅務當局에 제출해야 한다. (1) 海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明細書(제59호 서식), (2) 海外特殊關係者의 要約 損益計算書(제1호 서식), (3) 추가적인 財務諸表 또는 附屬書類.

가) 海外特殊關係者와의 去來明細書

外國 法人의 韓國 子會社 및 固定事業場은 매년 法人稅 申告時 ‘규정’ 제11조에 의해 ‘海外特殊關係者 등과의 去來明細書’를 제59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去來明細書에는 海外特殊關係者와의 거래만 기록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다. 收入去來의 경우 (1) 在庫資產의 販賣, (2) 기타 有形資產의 販賣, (3) 無形資產의 讓渡 및 使用權의 移轉, (4) 利子收入, (5) 用役に 대한 對價, (6) 其他. 支給去來의 경우 (1) 在庫資產의 買入, (2) 기타 有形資產의 買入, (3)

無形資產의 取得 또는 使用, (4) 利子支給, (5) 用役に 대한 對價支給, (6) 其他.

나) 海外特殊關係者의 要約 損益計算書

당해 法人이 각 海外特殊關係企業과 행한 거래금액이 수입액과 지급액을 합하여 事業年度 말 현재 50億원 이상인 경우, 그 法人은 海外去來金額의 규모가 상위 3순위 이내에 속하는 海外特殊關係企業의 要約 損益計算書を 제출해야 한다. 이 要約 損益計算書는 韓國의 會計方式에 따라야 한다. 書類形式을 韓國式으로 전환하는 것이 企業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계정의 재구성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特殊關係企業의 財務諸表 또는 附屬書類

外國 法人의 總發行株式 또는 總出資持分の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內國 法人, 즉 海外 子會社를 가지고 있는 內國 法人과 海外 支店을 설치한 內國 法人이 法人稅 申告書を 제출할 때에는 海外特殊關係者 및 海外 支店에 관한 다음의 영문표기 財務資料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貸借對照表, (2) 損益計算書, (3) 利益剩餘金(또는 缺損金)處分計算書, (4) 財務狀態變動表, (5) 소재지국 政府에 제출한 法人稅 申告書, (6) 販賣費 및 管理費明細書, (7) 製造原價明細書, (8) 財務諸表에 대한 註釋明細書.

2) 書面分析 및 調査, 審理業務 집행시 提出書類

稅務當局은 書面分析 또는 調査, 審理對象 法人이 海外特殊關係者와 행한 해외 거래의 獨立企業價格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法人이나 海外特殊關係者에 대하여 다음의 資料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書面分析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로는 (1) 資產의 讓渡 또는 買入契約書, (2) 製品의 價格表, (3) 製品의 製造原價明細書,

(4) 非關聯企業과의 主要 品目別 去來明細書, (5) 用役의 제공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해 앞서 열거한 것에 준하는 資料 및 證憑書類 등이다. 그리고 調査 및 審理業務 집행시에는 (1) 위에 열거한 資料 및 證憑書類, (2) 法人組織表 및 職務明細書, (3) 國際去來價格決定 資料, (4) 그룹내 價格決定 指針, (5) 會計處理基準, (6) 당해 해의 거래에 따른 關係 會社別 수행 업무내용 설명서, (7) 대상 法人이나 海外特殊關係者 소재 子국 동종 업계의 海外去來 慣行, (8) 기타 가격산출을 위해 필요한 資料 및 證憑書類 등이 요구된다.

3) 資料提出 要求의 不履行에 대한 制裁 措置

대상 法人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資料 및 證憑書類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法人은 정밀 서면분석 또는 稅務調査를 받게 된다. 조사대상 기업이 그 企業에 대한 稅務調査 과정에서 조사자가 요구한 資料 및 證憑書類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國稅廳長은 獨立企業價格 산정을 위한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獨立企業價格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法人의 法人稅 課稅標準 및 稅額을 결정할 수 있다. 國稅廳의 조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納稅者는 國稅審判所에 제소하거나 國稅基本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法院에 제소할 수 있다.

3.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에 대한 實效稅率

本節에서는 韓國에서 營業활동을 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실제로 어느만큼의 法人稅를 납부하였는지,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이 다른 國內 企業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 본다. 本章의 第1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國의 租稅制度는 外國人 投資企業을 다른 國內 企業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로 外國人 投資企業의 申告所得에 대한 實效稅率은 다른 國內 企業의 그것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은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實效稅率과 다를 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韓國은 外國人 投資企業이 사업상 필요한 것 이외의 土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경우 不動產 去來를 통한 讓渡差益의 실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는 不動產 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加稅를 납부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國內 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이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에 비해 特別附加稅만큼 높을 것임을 뜻한다. 둘째, 韓國에는 外國人 投資企業에만 적용되는 租稅減免制度가 있으므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이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實效稅率보다 낮을 수 있다. 本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을 비교해 본다.

신고된 所得에 대한 實效稅率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外國人 投資企業이 移轉價格操作을 통해 稅源을 韓國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한다면 韓國은 稅收의 損失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賣出額 또는 總資產 規模에 대한 稅負擔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분석해 본다. 만약 移轉價格操作이 전혀 없고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이 처한 기타 사업환경이 같다면 賣出額 規模 또는 總資產 規模에 대한 租稅負擔의 비율은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間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表 Ⅲ-2〉는 製造業에 종사하는 外國人 投資企業 및 國內 企業의 法人稅 納付實績을 보여 준다. 위쪽의 다섯 항목은 外國人 投資企業의 課稅所得 및 法人稅 納付實績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 항목은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을 國內 企業과 비교해 놓은 것이다. 이 表에 제시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資料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國稅廳에 제출한 法人稅納付 申告書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자료는 韓國銀行에서 발간한 『企業經營分析』에서 얻었다. 『企業經營分析』

은 外國人 投資企業을 포함하여 韓國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表 Ⅲ-2>의 마지막 줄에 나타난 수치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製造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의 수가 이 부문에 속하는 韓國 기업 전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企業經營分析』에서 얻은 자료가 다른 國內 企業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表 Ⅲ-2>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法人稅 納付實績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88~1991
外國人 投 資 企 業	利益이 발생한 기업의 純利益(A)	1,126.4	1,078.8	1,635.0	1,250.8	5,091.0
	損失이 발생한 기업의 純損失(B)	227.1	378.9	912.9	828.7	2,347.6
	外投企業 전체의 純利 益(C=A-B)	899.3	699.9	722.1	422.1	2,743.4 (1,844.1) ¹⁾
	法人稅 納付實績 (D)	283.2	249.8	274.3	324.0	1,131.3 (848.1) ¹⁾
	外資導入法에 의한 租稅減免(E)	N.A.	24.8	27.9	25.2	(77.9) ¹⁾
	D/C	31.49	35.70	37.99	76.76	41.24
國 內 企 業	法人稅 納付實績 /純利益	40.05	42.93	42.09	39.00	40.91

註: 1) 괄호 안의 수치는 1989~1991년에 대한 것임.

資料: 國稅廳, 法人稅 申告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기업에 損失이 발생하면 그 기업은 損失額을 그 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한 實效稅率을 구하기 위해서는 利益이 발생한 기업의 純利益에서 이월된 損失額을 차감한 것을 課稅標準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製造業部門에 속하는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移越

損失額에 대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表 Ⅲ-2>에서는 總利益에서 當期的 總損失을 차감한 금액, 즉 純利益을 課稅標準으로 삼아 實效稅率을 계산하였다. 이 계산에 따르면 1988~1991년 外國人 投資企業의 申告所得에 대한 實效稅率(<表 Ⅲ-2>의 D/C)은 평균 41.24%로 다른 國內 企業의 경우(40.91%)보다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特別附加稅를 납부하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거의 없으며, 外資導入法에 의해 外國人 投資企業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租稅減免制度가 있어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이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그것보다 낮을 것이라는 앞의 예측과 대치되는 결과이다. 國內 企業이 1989~1991년 동안 납부한 不動產 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加稅는 위의 가정²¹⁾에 따라 구한 課稅標準의 2.5% 정도였다²²⁾. 1989~1991년도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額은 같은 가정하에서 구한 課稅標準의 4.2%였다²³⁾.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추정된 實效稅率은 國內 企業에 비해서 6~7% 정도 낮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 Ⅲ-2>에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實效稅率이 國內 企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總利益에서 總損失을 차감한 금액이 課稅標準이라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損失이 발생할 경우 그 損失額은 당해 연도에 課稅되지 않고 향후 5년간 이월된다. 따라서 5년 동안 損失額이 전부 이월된다면 장기적으로 實效稅率은 損失의 발생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損失은 2~3년간 지속되며 赤字로 돌아서더라도 초기에는 그 利益의 규모가 과거의 損失을 전부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만약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에 대한 損失의 비율이 國內 企業의 동 비율에 비해 상

21) 課稅標準=(總利益-總損失)이라는 가정.

22) 자료는 國稅廳의 『국세통계연보』에서 구한 것으로 全產業 평균임.

23) <表 Ⅲ-2>의 자료 중 E를 C로 나눈 것, 즉 E/C임.

당히 크다면, ‘總利益－總損失’이 課稅標準이라는 가정에 따를 경우 ‘總利益－移越缺損額’으로 정의되는 실제적인 課稅標準을 따를 경우에 비해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標準을 과소 평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을 國內 企業에 비해 과대 평가하게 될 것이다.

〈表 Ⅲ-3〉은 國稅廳에서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全產業 部門의 國內 企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國內 企業의 利益에 대한 損失의 比率과 缺損金의 移越比率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에 적용하여 ‘利益－移越缺損金’으로 정의되는 課稅標準을 추정한 후 추정된 課稅標準에 대한 實效稅率을 구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88~1991년 國內 企業 전체의 缺損金/ 利益 비율은 22.9%였다. 이를 『企業經營分析』에 나타난 製造業部門의 자료에 적용하여 동 기간 동안 國內 企業의 純損失과 純利益을 추정한 결과 각각 4兆 4,282億원, 19兆 3,318億원으로 나타났다. 移越缺損金에 대한 자료를 보면 國內 企業 전체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 이월한 缺損金은 3兆 3,280億원으로 같은 기간 損失額의 22.2%였다. 이 비율을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에 적용하여 移越缺損金과 課稅標準(利益－移越缺損金)을 구하였다. 이 課稅標準에 대한 實效稅率은 外國人 投資企業이 약 25%, 다른 國內 企業이 약 33%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이 다른 國內 企業에 대한 實效稅率보다 8% 포인트 정도 낮다. 이 8% 포인트의 稅率 격차는 앞에서 예측하였던 6~7%의 격차에 근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韓國 政府가 租稅減免을 제외하고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國內 企業과 동일한 租稅制度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申告所得에 대해 課稅함에 있어서 韓國 政府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租稅制度和 稅務行政을 통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申告所得에 대한 實效稅率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곧 韓國 政府가 外國人 投資企業으로부터 正當한, 즉 다른 國內 企業으로부터 징수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租稅를 징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外國人 投資企業이 國內에서 발생한 所得을 移轉價格操作 등을 통해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여 韓國의 申告所得을 감소시킨다면 이는 韓國 政府의 稅收가 다른 국가로 유출됨을 의미한다.

〈表 Ⅲ-3〉 外國人 投資企業과 國內 企業의 實效稅率(1988~1991年)

(單位: 10億원, %)

	外國人 投資企業	國內 企業
순이익(A=C-B)	2,743.4	14,903.6
損失이 발생한 기업의 純損失(B)	2,347.6	4,428.2 ¹⁾
利益이 발생한 기업의 純利益(C)	5,091.0	19,331.8 ¹⁾
缺損移越金(D)	520.6 ²⁾	982.1 ²⁾
조정된 課稅標準(E=C-D)	4,570.4	18,349.7
法人稅 納付實績(F)	1,131.3	6,096.5
조정된 實效稅率(G=F/E)	24.8	33.2

註: 1) 國內 企業 전체의 缺損金/利益 비율 22.9%를 利益에 대한 損失의 비율로 가정하고 계산한 것임.

2) 모든 產業部門에 대해서 구한 國內 企業 전체의 缺損金 移越比率이 製造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과 國內 企業에 그대로 적용됨.

資料: 〈表 Ⅲ-2〉와 同一.

〈表 Ⅲ-4〉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賣出額 또는 資產 規模가 유사한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租稅를 韓國 政府에 納付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이 表에 의하면 國內 企業은 賣出額이나 資產 規模에 비해 外國人 投資企業보다 0.25~0.27% 포인트 정도 稅金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0.07% 포인트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에 의해서 설명되고, 0.06% 포인트는 外國人 投資企業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不動產 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加稅에 의해 설명된다. 나머지 0.12~0.14% 포인트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申告利益率이 國內 企業보다 낮은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外國人 投資企業이 신고한 賣出額

〈表 Ⅲ-4〉 賣出額 및 資產 規模에 대한 法人稅 納付額의 比率

(單位: 10億원, %)

		1988	1989	1990	1991	1988~1991
外國人 投資 企業	法人稅(A)	283.2	249.8	274.3	324.0	1,131.3
	租稅減免(B)		24.8	27.9	25.2	77.9 ¹⁾
	賣出額(C)	28,465.8	30,563.7	37,010.0	44,450.4	140,489.9
	總資產(D)	24,478.7	29,389.9	39,126.6	49,221.2	142,216.4
	A/C	0.99	0.82	0.74	0.73	0.81
	A/D	1.16	0.85	0.70	0.66	0.80
	B/C		0.08	0.08	0.06	0.07 ¹⁾
	B/D		0.08	0.07	0.05	0.07 ¹⁾
國內 企業	法人稅/賣出額	1.34	1.19	1.02	0.88	1.08
	法人稅/總資產	1.52	1.18	0.97	0.81	1.05

註: 1) 1989~1991年.

資料: 〈表 Ⅲ-2〉와 同一.

또는 總資產 對比 利益率이 다른 國內 企業보다 낮다는 사실이 바로 外國人 投資企業이 移轉價格操作을 통해서 國內 所得을 外國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國內 營業環境이나 내부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실제 利益率이 다른 國內 企業의 利益率보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⁴⁾. 이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24) Grubert, Goodspeed & Swenson(1994)은 美國 내에서 營業활동을 하고 있는 外國人 支配企業의 利益率이 다른 美國 企業에 비해서 낮은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外國人 支配企業과 다른 美國 企業의 利益率 격차의 약 절반 정도는 移轉價格操作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면, 外國人 投資企業의 경우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 많아 초기 設備投資, 廣告費 등의 費用 支出이 크기 때문에 利益率이 다른 國內 企業보다 낮다는 것이다.

IV.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 分析

1. 研究方法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國에서 營業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은 같은 규모의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서 적은 稅金을 韓國 政府에 納付하고 있다. 이 차이는 韓國 政府가 外國人 投資企業에 보다 관대한 租稅政策을 취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신고한 利益率이 같은 규모의 다른 國內 企業이 신고한 利益率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申告 利益率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外國人 投資企業이 임의로 移轉價格을 조작함으로써 韓國에서 다른 국가로 所得을 이전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기업의 移轉價格操作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업만 갖고 있는 지극히 사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을 모두 조사해 보기 이전에는 移轉價格操作 여부 및 규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공개적으로 발표된 統計資料만 가지고 移轉價格操作 여부 및 그 규모를 직접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移轉價格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移轉價格操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Grubert & Mutti(1991)는 美國 企業들이 투자하고 있는 33개국에 대해서 各國에서 활동하고 있는 美國 企業의 現地 子會社 利益率을 각국의 稅率과 GDP에 회귀분석하여 現地國 稅率이 낮을수록 利益率이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美國系 多國籍 企業이 現地國의 租稅를 회피하기 위하여 所得을 高稅率國에서 低稅率國으로 이전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Hines & Rice(1990)도 金融部門을 제외한 美國 企業들의 海外 子會社 利益率에 미치는 現地國 稅率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Grubert & Mutti(199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美國 企業의 海外 子會社 收益과 現地國 稅率間에 負(-)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두 경우는 美國 企業과 海外 子會社 사이의 所得移轉 관계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다는 海外 子會社間의 所得移轉을 분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arris, Slemrod & Yeung(1994)은 Compustat에 수록된 美國의 個別 企業 資料를 이용하여 賣出額 또는 總資產에 대한 美國 納付稅額의 비율이 그 기업이 어느 국가에 子會社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低稅率國 또는 역시 低稅率國으로 분류되는 '아시아의 4마리 용' 지역에 子會社를 갖고 있는 美國 企業의 美國 納付稅額은 賣出額이나 資產 規模에 비해 적고, 高稅率國에 子會社를 갖고 있는 美國 企業은 규모에 비해 비교적 많은 租稅를 美國 政府에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美國의 多國籍 企業이 所得을 高稅率國에서 美國으로, 그리고 美國에서 低稅率國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Grubert, Goodspeed & Swenson(1994)은 개별 기업의 法人稅 申告資料를 이용하여 外國人 投資企業과 美國 企業 전체의 平均利益率 격차가 外國人 投資企業의 높은 負債調達費用 등 租稅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가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外國人 投資企業과 美國 企業 전체의 平均利益率 격차 중 약 50% 정도는 租稅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ubert, Goodspeed & Swenson은 그 나머지를 移轉價格操作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所得移轉을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한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推定方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韓國의 경우에는 자료가 부족하여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外

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 사이의 利益率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그러나 對韓 投資者의 居住地가 10개도 안되는 소수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居住地國別로 분류한 자료를 횡단면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國稅廳에서 제공한 外國人 投資企業의 法人稅 申告資料는 표본기간이 짧고 충분히 세분되어 있지 않아 Grubert, Goodspeed & Swenson(1994)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도의 統計的 분석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外國人 投資企業을 移轉價格操作의 동기 또는 가능성이 큰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으로 구분하여 양 부문간의 平均利益率을 비교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國內 外國人 投資企業의 移轉價格操作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았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平均利益率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 보았다. 많은 外國人 投資企業들이 韓國에서 다른 국가로 所得을 이전한다면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은 다른 國內 企業의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것이다.

둘째, 外國人 投資比率, 즉 總持分에서 外國人이 보유하고 있는 持分の 비율에 따라 利益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外國人 株主와 內國人 株主는 移轉價格操作에 대해 상반되는 견해를 가질 수 있다. 外國人 株主는 가능하다면 韓國에서 발생한 利益을 韓國보다 稅率이 낮은 국가의 特殊關係企業에 이전함으로써 企業集團全體의 利益(global profit)을 극대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持分만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內國人 株主는 企業集團全體의 利益보다는 國內 利益(local profit)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內國人 株主는 國內에서 발생한 利益을 다른 低稅率國으로 이전하자는 外國人 株主의 주장에 반대할 것이며, 이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內國人 株主의 지배력이 클수록 韓國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所得을 移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을 業種別로 비교하여 보았다. 外

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에 대한 동기가 업종별로 다르다고 주장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所得移轉이 비교적 수월한 업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업종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一般機械, 電氣 및 電子製品, 輸送用 機械 등 機械工業部門에서 移轉價格操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이들 업종이 주로 技術 및 人的資本 集約的인 부문들로 研究開發費의 비중이 높아 이를 製品原價에 반영하는 데 융통성이 큰 편이며, 다른 부문과는 달리 이들 업종에 속하는 製品, 특히 소요되는 部品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문에 의한 生産의 비중이 커서 獨立企業價格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移轉價格操作의 대상이 되는 多國籍 企業의 特殊關係企業間 거래가 이 부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이들 부문의 移轉價格操作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마지막으로 對韓 直接投資者의 居住地國別 平均利益率을 비교해 보았다. Grubert & Mutti(1991)의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 방향은 投資者의 居住地國 租稅制度뿐만 아니라, 다른 子會社가 低稅率國에 소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高稅率國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나 國稅廳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Grubert & Mutti(1991)의 횡단면 分析方法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분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投資者의 居住地國別 平均利益率의 단순비교에 그쳤다. <表 IV-1>은 居住地國의 租稅制度에 따라 所得을 이전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表에서는 對韓 投資者의 居住地國을 低稅率國과 高稅率國으로 분류하였다. 低稅率國은 法定法人稅率이 韓國의 稅率에 비해 현저하게 낮

25) 韓國의 경우에는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OECD(1993)에 의하면 日本 製造業體의 海外特殊關係者와의 거래 중 87.8%는 機械工業部門의 거래였으며, 美國 製造業體의 海外關係企業에 대한 輸出의 80% 정도도 機械工業部門에서 발생하였다.

〈表 IV - 1〉 居住地國 租稅制度和 所得移轉의 方向

居住地國 租稅制度 ¹⁾		海外所得에 대한 有效稅率	所得移轉 方向
低稅率國		t보다 높음	韓國에서 居住地國 또는 다른 低稅率國(host country)으로
高稅率國	外國 稅額 控除 制度	t	所得移轉 없음
	國別控除 限度	t 또는 $\sum t_i f_i / \sum f_i$	海外 納付稅額($\sum t_i f_i$)이 控除限度($t \sum f_i$)보다 큰 경우 韓國으로부터 다른 低稅率國(host country)으로 또는 稅率이 韓國보다 높은 다른 國家(host country)로부터 韓國으로
	一括控除 限度	t	韓國에서 다른 低稅率國(host country)으로 또는 다른 高稅率國(home or host country)에서 韓國으로
外國所得 免稅制度		t	韓國에서 다른 低稅率國(host country)으로 또는 다른 高稅率國(home or host country)에서 韓國으로

註：1) 低稅率國은 稅率이 韓國보다 현저하게 낮은 國家이며, 高稅率國은 稅率이 韓國의 稅率과 유사하거나 높은 國家임.

2) t는 居住地國의 稅率을, t_i 는 i국[投資對象國(host country)]의 稅率을, f_i 는 i국(投資對象國)에서 발생한 所得을 나타냄.

은 國家들을 의미한다²⁶⁾. 이 경우 韓國에서 부과되는 所得에 대한 稅率이 投資者의 居住地國 안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稅率보다 높으므로 投資者들은 所得을 韓國에서 居住地國 또는 다른 低稅率國으로 이전함으로써 稅後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 이외의 國家들은 모두 高稅率國으로 분류하였으며, 高稅率國은 海外所得에 대한 租稅制度에 따라 다시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6) 所得移轉에 관한 분석에서는 租稅支援制度를 감안한 實效稅率(effective tax rate)보다 法定稅率이 더 유용하다. 그 이유는 投資額이 결정된 상태에서 移轉價格操作에 의한 租稅節減 效果는 法定稅率과 投資誘引制度를 모두 고려한 實效稅率보다는 法定稅率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첫번째 집단은 外國에 納付한 所得稅額을 本國 稅額에서 공제해 주는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稅額控除限度額 決定方法에 따라 一括限度制(worldwide credit)를 택한 국가들과 國別限度制(credit by source)를 택한 국가들로 나뉘어진다. 國別限度制를 택하고 있는 국가(예, 英國)의 경우 低稅率國으로의 所得移轉이 高稅率國에서 발생한 控除限度超過額을 상쇄시켜 주지 못한다. 따라서 母國의 稅率이 韓國의 稅率보다 높은 이상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所得을 韓國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一括限度制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居住地國을 제외한 全世界에 납부한 稅額總計($\sum t_i f_i$)가 全世界로부터 거두어들인 所得에 대한 居住地國 稅額($t \sum f_i$)보다 많은 경우, 즉 外國 納付稅額이 控除限度를 초과하는 경우 高稅率國(host country)에서 발생한 所得을 稅率이 낮은 다른 국가(host country)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租稅節減을 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企業들은 韓國에서 稅率이 낮은 다른 국가(host country)로 또는 稅率이 韓國보다 높은 다른 국가(host country)에서 韓國으로 所得을 이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韓國의 稅率이 高稅率國으로 분류되는 OECD 회원국들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후자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高稅率國의 두번째 집단은 外國 所得免稅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投資者들은 韓國의 所得을 低稅率國에 소재한 다른 子會社로 이전하거나 다른 高稅率國 또는 母國에서 발생한 所得을 韓國으로 이전함으로써 租稅節減을 도모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居住地國 課稅制度和 所得移轉의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居住地國이 低稅率國인 경우 韓國으로부터 外國으로 所得을 移轉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며, 外國 所得免稅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가 그 다음이다. 國別限度制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對韓 投資者의 경우에는 韓國의 所得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동기가 없다.

2.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 分析

가.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利益率 比較

〈表 IV-2〉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을 다른 國內 企業의 利益率과 비교한 것이다.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자료는 國稅廳에 신고한 法人稅 申告書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서 1988~1991년 동안 韓國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製造業部門의 모든 外國人 投資企業을 총괄하고 있는데 업체수는 1988년 1,115개, 1989년 1,247개, 1990년 1,332개, 1991년 1,320개였다. 國內 企業에 대한 자료는 韓國銀行이 매년 발간하는 『企業經營分析』에서 구한 것이다.

1988~1991년도 國內 企業의 營業利益 對 賣出額 比率(賣出額 營業利益率)은 6.02~6.82%였는데 비해 外國人 投資企業이 신고한 동 비율은 5.36~6.16%로 다른 國內 企業의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다른 利益

〈表 IV-2〉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利益率 比較

(單位: %)

		1988	1989	1990	1991
營業利益/賣出額	外國人 投資企業	6.04	5.36	6.16	5.80
	國內 企業	6.82	6.02	6.50	6.56
營業利益/總資產	外國人 投資企業	7.02	5.58	5.83	5.24
	國內 企業	7.73	5.93	6.13	5.98
賣出總利益/賣出額	外國人 投資企業	14.71	14.80	15.91	15.80
	國內 企業	16.12	16.07	17.03	17.32
賣出總利益/總資產	外國人 投資企業	17.11	15.39	15.05	14.27
	國內 企業	18.27	15.84	16.06	15.79

資料: 〈表 III-2〉와 同一.

率 지표에 대해서도 모든 비교 연도에 예외없이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 利益率이 다른 國內 企業의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營業 利益의 賣出額 또는 總資產에 대한 비율의 경우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間의 利益率 격차가 0.3%~0.78% 포인트 정도이며, 賣出總利益의 경우에는 이 격차가 0.45%~1.52% 포인트 정도이다. 이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申告利益率이 다른 國內 企業보다 낮아 같은 규모의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서 韓國 政府에 稅金을 적게 내고 있다는 앞의 <表 III-4>의 결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나. 外國人 投資比率別 利益率 比較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을 外國人의 持分 所有比率에 따라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집단은 利益配當 등의 의사결정에서 外國人 株主가 支配的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집단으로 外國人 投資比率이 70%를 초과하는 업체들이 이에 속한다. 1991년도 製造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이 총 1,320개 업체였는데 그 중 277개 업체가 이 집단(이하 '집단 A')에 포함된다. 집단 A는 外國人 投資比率이 100% 또는 이에 근접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²⁷⁾ 移轉價格操作을 통해 多國籍 企業群 전체의 利益을 極大化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에 속한 外國人 投資企業의 평균 外國人 投資比率은 93.44%이다(<表 IV-3> 참조).

두번째 집단은 外國人 投資比率이 40% 초과~70% 이하의 범위에 있어 利益配當 등의 의사결정에서 外國人 株主와 內國人 株主 중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독주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이를 집단 B라고 하였다. 집단

27) 277개 업체 중 약 68%인 188개 업체의 外國人 投資比率이 95%를 초과하며, 이를 포함하여 外國人 投資比率이 85%를 초과하는 업체수는 전체의 84.5%에 달한다.

B에 속하는 668개 기업 중 대다수가 外國人 投資比率 45% 초과~50% 이하의 범위 내에 있어²⁸⁾ 이 집단은 실제로 外國人 投資比率이 50% 또는 이를 약간 밑도는 外國人 投資企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의 平均 外國人 投資比率은 50.38%이다. 이러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집단 A는 사실상 외국인이 기업을 거의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집단이며, 집단 B는 外國人 株主와 內國人 株主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B를 外國人 投資比率 50%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개의 집단으로 세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外國人 投資比率이 50%를 약간 웃도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內國人 株主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國內 所得을 대폭적으로 海外로 이전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C는 外國人 投資比率이 40% 이하인 기업들로 內國人 株主가 外國人 株主에 비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C에 속하는 375개 外國人 投資企業의 外國人 投資比率은 0~40% 사이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平均 外國人 投資比率은 17.35%이다. 집단 C는 韓國에서 外國으로 所得을 移轉하고자 하는 동기가 거의 없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表 IV-3〉에 의하면 집단 A에 속하는 기업의 平均賣出額이 약 120億원인 데 비해 집단 B의 平均賣出額은 205億원이며, 집단 C는 732億원으로 外國人 投資比率이 낮은 업체일수록 企業規模가 크다.

〈表 IV-4〉와 [圖 IV-1]은 각 집단별 營業利益의 賣出額 및 總資產에 대한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1988~1991년 동안의 利益率 變化推移를 보면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은 전반적으로 國內 企業의 平均

28) 668개 업체의 77.84%인 520개 업체의 外國人 投資比率이 이 범위에 속한다.

〈表 IV-3〉 製造業部門 外國人 投資企業의 特性(1991年)

(單位: 個, %, 10億원)

	집단 A (R>70%)	집단 B (70%≥R>40%)	집단 C (40%≥R>0%)	全 體
業體數	277	668	375	1,320
平均 外國人 投資比率	93.44	50.38	17.35	42.85
業體當 總資產	10.85	23.84	80.76	37.28
業體當 賣出額	11.97	20.50	73.15	33.67

註: R은 外國人 投資比率임.

資料: 國稅廳, 法人稅 申告資料.

〈表 IV-4〉 外國人 投資比率別 利益率 比較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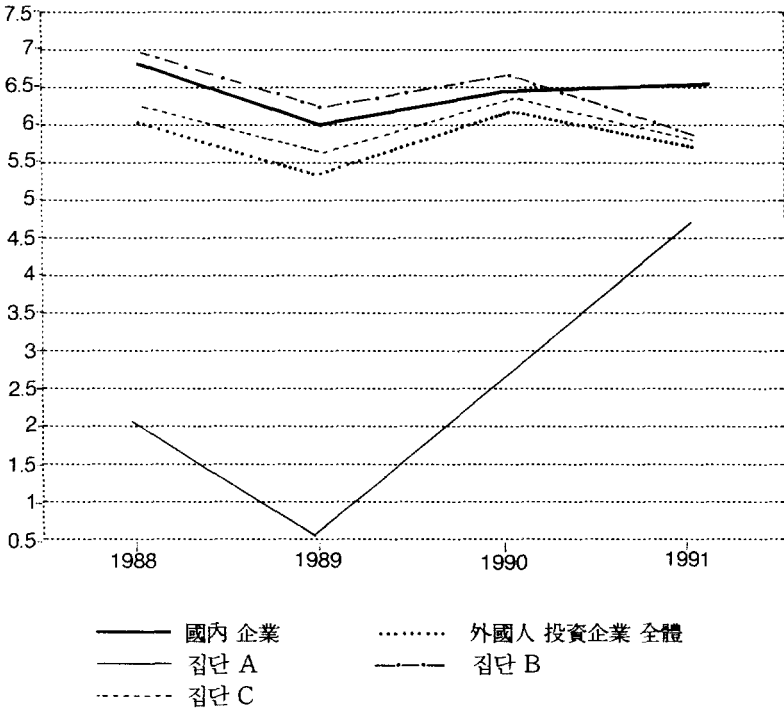
			1988	1989	1990	1991	1988~1991 평균
營業利益/ 賣出額	外國人 投資企業 ¹⁾	집단 A (93.4%)	2.07	0.56	2.68	4.79	2.53
		집단 B (50.4%)	7.00	6.28	6.68	5.92	6.47
		집단 C (17.4%)	6.28	5.61	6.35	5.87	6.03
		平 均	6.04	5.36	6.16	5.80	5.84
	國 內 企 業	6.82	6.02	6.50	6.56	6.48	
營業利益/ 總資產	外國人 投資企業 ¹⁾	집단 A (93.4%)	3.09	0.78	3.19	5.29	3.09
		집단 B (50.4%)	8.06	6.31	6.08	5.10	6.39
		집단 C (17.4%)	7.04	5.72	5.97	5.31	6.01
		平 均	7.02	5.58	5.83	5.24	5.92
	國 內 企 業	7.73	5.93	6.13	5.98	6.44	

註: 1) 괄호 안에 제시된 수치는 각 집단의 平均 外國人 投資比率임.

資料: 〈表 III-2〉와 同一.

利益率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外國人 投資企業 중에서도 집단 A의 利益率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A의 營業利益/賣出額 비율은 外國人 投資企業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營業利益/總資產의 경우에도 집단 A의 평균이 外國人 投資企業 전체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A가 다른 집단에 비해 韓國의 所得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圖 IV-1] 營業利益 / 賣出額 推移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營業利益率과 賣出利益率 중 어느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移轉價格操作은 特殊關係企業間의 거래에 대해 賣出原價 및 (또는) 販賣價格을 조작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賣出利益率이 移轉價格操作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서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企業의 영업활동 목표는 賣出利益이 아닌 營業利益의 極大化에 있으며 課稅標準은 賣出利益이 아니라 營業利益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多國籍 企業이 租稅節減을 위해 소득이전을 고려하고 移轉價格操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 해당 기업은 營業利益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移轉價格을 결정할 것이다. 만약 外國人 投資企業의 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지출이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서 많다면 그 外國人 投資企業은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 더 많은 賣出利益을 얻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유한 技術의 보유 등에 의해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賣出利益率이 國內 企業의 그것보다 높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外國人 投資企業의 賣出利益率이 國內 企業보다 높다고 하여 營業利益率에 대한 검토없이 移轉價格操作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속단이다. 즉, 賣出利益率이 國內 企業보다 10% 높은 外國人 投資企業이 5%만 높다고 신고함으로써 營業利益率을 상당히 낮은 상태로 끌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賣出利益率보다는 營業利益率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집단 A의 낮은 이익률이 모두 移轉價格操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移轉價格操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집단 A의 利益率이 다른 집단의 利益率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外國人 投資比率이 낮은 外國人 投資企業들은 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國內 大企業과의 合作企業인 데 비해 外國人 投資比率이 높은 外國人 投資企業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집단 A의 利益率이 外國人 投資比率이 낮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製造業部門 國內 企業의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을 大企業과 中小企業으로 나누어 보면, 大企業의 경우 1989~1991년까지 6.18~7.20%였는 데 비해 中小企業은 같은 기간 동안 4.73~5.85%로 大企業에 비해 다소 낮았다(<表 IV-5> 참조).

둘째,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韓國 輸出產業의 採算性 악화에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과거 韓國 政府는 外國人의 國內 企業 持分所有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일례로 1970년대에는 國內 生產品을 전량 輸出한다는 조건하에서만 外國人 單獨投資가 허용되었다. 그 결과 집단 A에 속하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상당수는 값싼 勞動力의 이점을 지닌 生産基地로 韓國을 선택한 輸出指向的인 業體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급격한 賃金上昇 등으로 輸出競爭力이 약화됨에 따라 輸出企業의 利益率이 크게 감소하였다. 國內 企業을 輸出企業과 內需企業으로 구분해 보면 1989~1990년 輸出企業의 利益率은 4.76~5.43%로 內需企業의 利益率 6.63~6.89%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에는 전년에 비해 輸出企業의 利益率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 후 점차 회복되어 1991년에는 輸出企業의 利益率이 內需企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輸出企業의 利益率 變化趨勢는 집단 A의 利益率 變化推移와 같다.

〈表 IV -5〉 國內 企業의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

(單位: %)

	1988	1989	1990	1991
製 造 業				
大 企 業	7.19	6.18	6.73	7.20
中 小 企 業	5.73	5.47	5.85	4.73
全 體 產 業				
輸 出 企 業 ¹⁾	6.57	4.76	5.43	6.62
內 需 企 業 ²⁾	7.02	6.63	6.89	6.54

註: 1) 輸出額/賣出額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2) 輸出額/賣出額 비율이 50% 미만인 기업.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셋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政府는 外國人의 國內 企業 持分所有를 엄격히 관리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집단 A의 기업 중 상당수는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업들로서 아직 정상적인 利益率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집단 A에 속하는 기업들의 利益率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營業利益率上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表 IV-6>의 賣出利益率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表 IV-6> 集團 A의 賣出利益率 推移

(單位: %)

	1988	1989	1990	1991
賣出利益 / 賣出額	8.70	9.75	13.32	17.05
賣出利益 / 總資產	12.97	13.53	15.84	18.81

資料: 國稅廳, 法人稅 申告資料.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집단 A의 낮은 利益率을 설명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輸出企業의 採算性 악화와 집단 A의 상당수가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어서 費用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요인들의 설명력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移轉價格操作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 産業別 利益率 比較

<表 IV-7>은 주요 製造業部門別로 外國人 投資企業 전체와 집단 A에 속하는 기업의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을 비교한 것이다²⁹⁾. 이 表에

29) 1991년 현재 집단 A에 속하는 업체수가 15개 미만인 업종은 <表 IV-7>에서 제외하였음.

의하면 집단 A의 利益率이 纖維, 衣服 및 가죽 製品 그리고 機械工業部門의 低조한 利益率에 의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部門에 속하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은 각각 6.1%, 5.3%로 外國人 投資企業의 전체 평균(5.8%)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집단 A의 이들 두 部門에 대한 平均利益率은 각각 0.3%, 1.6%로 아주 낮다. 이들 두 部門 중에서 특히 業體數로 보아 집단 A의 58.1%, 賣出額으로는 72.2%를 차지하고 있는 機械工業部門의 낮은 利益率이 집단 A의 平均利益率을 낮추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技術集約度가 높고, 標準化의 정도가 낮으며, 注文生産의 비중이 크고, 特殊關係企業間의 거래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機械工業部門은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所得移轉의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이다. 그러므로 <表 IV-7>의 결과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韓國에서 外國으로 所得移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機械工業部門에 속하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이 집단 A의 平均利益率을 3배나 증가한다는 점은 移轉價格操作의 가능성을

<表 IV-7> 産業部門別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¹⁾(1988~1991年)

(單位: %)

産業部門	外國人 投資企業				國內企業 (平均利益率)
	平均利益率		집단 A의 産業別 構成		
	全體	집단 A에 속하는企業	業體數 (1991)	賣出額 (1988~1991)	
飲食料品	4.8843	5.7484	7.9	8.3	5.2492
纖維, 衣服 및 가죽	6.1084	0.2747	7.6	2.6	4.7640
化學, 石油, 石炭, 고무 및 플라스틱	6.6518	6.2436	15.5	6.6	7.5021
機械	5.3121	1.6445	58.1	72.2	6.3264
製造業	5.8491	2.6100	100.0	100.0	6.4825

註: 1)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

資料: <表 III-2>와 同一.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집단 A에 속하는 外國人 投資企業들이 纖維, 衣服 및 가죽 製品部門에서 낮은 利益率을 실현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輸出産業의 採算性 악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업종은 전통적인 韓國의 輸出産業으로서, 과거 오랜 기간 동안 韓國 政府는 輸出을 조건으로 이 부문에 대해 100% 外國人 單獨投資를 허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輸出産業의 採算性 악화는 이 부문의 利益率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機械工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 중 外國人 投資比率이 높은 업체들의 利益率이 특별히 낮은 이유는 移轉價格操作 이외의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 投資者 居住地國別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比較

〈表 IV-8〉은 外國人 投資者의 居住地國을 稅率이 韓國보다 현저하게 낮은 低稅率國과 기타 高稅率國으로 구분하고 高稅率國을 다시 海外投資所得에 대한 課稅方法에 따라 國別限度制에 의한 外國稅額控除制度, 一括限度制에 의한 外國稅額控除制度, 外國所得免稅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平均利益率을 구한 것이다³⁰⁾. 이 表에 의하면 外國人 投資者의 居住地國이 低稅率國인 경우 平均利益率이 가장 낮고 高稅率國 중에서는 外國所得免稅制度, 一括限度에 의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택하고 있는 경우의 利益率이 國別限度에 의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表 IV-1〉에서 예측한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投資者의 居住地國 租稅制度로 보아 韓國에서 外國으로 所得을 이전할 가능성이 큰 국가일수록 對韓 投資利益率이 낮다.

30) 여기서는 집단 A 대신 外國人 投資比率 50% 이상인 업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집단 A의 投資者 居住地國別 利益率에 대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表 IV-8〉外國人 投資者의 居住地國 租稅制度에 따른 平均利益率¹⁾
(1988~1991年)

(單位: %)

		業 體 數	平 均 利 益 率
高 稅 率 國	外國稅額控除制度(國別限度)	22	9.1714
	外國稅額控除制度(一括限度)	459	5.7631
	外國所得免稅制度	69	5.6981
低 稅 率 國		22	1.4881
國 內 企 業			6.4825

註: 1) 賣出額 對比 營業利益率.

資料: 〈表 III-2〉와 同一.

이상의 분석을 살펴보면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構造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移轉價格操作을 통해서 韓國의 所得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利益率 構造와 일치한다. 즉, 外國人 投資比率이 높은 기업일수록 利益率이 낮으며, 그 중에서도 機械工業部門과 低稅率國, 外國所得免稅國의 利益率이 다른 外國人 投資企業에 비해서 더 낮게 나타났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移轉價格操作 이외의 다른 이유에 의해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낮은 利益率이 설명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移轉價格操作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V. 要約 및 結論

外國人の對韓 直接投資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간 유입액이 2億달러에도 못 미치는 적은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外國인이 國內에 投資하여 설립한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에 대한 租稅도 대부분 감면되었다. 따라서 韓國 政府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制度和 관련하여 어떻게 正當한 課稅權을 행사하는가보다는 어떻게 유인을 제공하여 政府가 원하는 部門의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을 촉진시키는가 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規制緩和 措置와 韓國의 經濟成長에 따른 投資環境 改善에 힘입어 外國人 直接投資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에는 연간 유입액이 10億달러에 달하게 되었으며,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도 대폭 축소되어 극히 일부의 기업만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租稅當局에서도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正當한 課稅權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에는 稅法改正을 통해서 移轉價格課稅制度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韓國의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制度和 과거의 稅負擔 資料를 분석하여 外國人 投資企業이 '정당한' 稅金을 부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外國人 投資企業이 申告所得에 대해 '정당한' 규모의 租稅를 납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고, 그 다음에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신고한 所得水準이 다른 國內 企業과 비교해 '정당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韓國의 稅法은 申告所得에 대해 課稅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例外規程을 제외하고는 外國人 投資企業과 國內 企業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한 가지 예외규정은 外資導入法에 의한 것으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

한 租稅減免制度이다. 外資導入法에 따르면 특정한 外國人 投資企業 즉, 高度技術隨件事業을 영위하는 外國人 投資企業과 輸出自由地域에 입주한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所得에 대한 租稅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들 부문에 外國人 直接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國家産業 發展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89~1991년도 製造業部門에 대한 租稅減免額은 780億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동 부문 外國人 投資企業의 租稅納付額의 9.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租稅制度上的 차별은 아니지만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實效稅率을 다른 國內 企業과 차이나게 만드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존재한다. 不動產讓渡差益에 대한 '特別附加稅'가 그것이다. 韓國 政府는 기업의 不動產讓渡差益에 대해 特別附加稅를 부과함으로써 重課稅하고 있는데, 外國人 投資企業의 不動產 보유가 政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特別附加稅 부담은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한 차이를 제외할 경우 外國人 投資企業의 申告所得에 대한 實效稅率은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만 가지고 外國人 投資企業이 韓國 政府에 '정당한' 租稅를 납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外國人 投資企業의 申告所得이 '정당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申告所得率의 차이로 인한 租稅負擔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外國人 投資企業과 다른 國內 企業의 賣出額 및 總資產에 대한 租稅納付額의 비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制度와 特別附加稅로 인한 차이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도 外國人 投資企業의 租稅負擔/賣出額 비율과 租稅負擔/總資產 비율이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서 각각 0.14% 포인트, 0.1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韓國 政府에 납부한 總稅額의 15%를 증가하는 규모로, 外國人 投資企業이 같은 규모의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 所得水準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만큼의 租稅를 적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外國人 投資企業이 國稅廳에 신고한 法人稅 申告資料를 통해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이 같은 규모의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양자간의 격차가 外國人 投資企業의 특성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移轉價格操作 등 '부당한' 租稅回避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外國人 投資企業과 國內 企業의 利益率 隔差 중 어느 정도가 移轉價格操作에 의해서 설명되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構造를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移轉價格操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營業利益/賣出額 比率)은 國內 企業의 全體 平均에 비해서 0.34~0.7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外國人 投資企業 중 外國人 投資比率이 70% 이상인 집단 A에 속하는 업체들의 利益率이 특히 낮아 1988~1991년 평균 2.53%로 外國人 投資企業 전체 평균의 43% 수준에 불과하였다. 집단 A의 낮은 利益率은 주로 機械工業部門의 利益率(1.64%)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機械工業은 특성상 技術集約的이며, 標準化의 정도가 낮고, 注文生産의 비중이 크고, 特殊關係企業間的 거래가 많기 때문에 製造業部門 중 移轉價格操作의 가능성이 가장 큰 업종이다. 또한 外國人 投資者의 居住地國 課稅制度에 따른 利益率 分布를 살펴보면 低稅率國으로부터의 投資에 대한 利益率이 1.49%로 매우 낮았으며, 高稅率國 중에서는 外國所得免稅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一括限度에 의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投資利益率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構造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移轉價格操作을 할 경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利益率 構造와 일치하는 것으로 韓國에 소재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 중 적어도 일부는 移轉價格操作을 통해서 韓國에서 다른 국가로 所得을 이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所得移轉 이외에도 外國人 投資企業과 國

內企業間の利益率 격차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低稅率國으로부터 유입된 外國人 投資企業 중에는 최근에 설립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外國人 投資企業의 平均利益率이 다른 國內企業의 평균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企業, 특히 外國人 投資企業은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利益을 내지 못하다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利益率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經營狀態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요인들만으로는 移轉價格操作이 있을 경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外國人 投資企業의 전반적인 利益率 構造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즉, 機械工業部門의 外國人 投資企業 중 집단 A에 속하는 기업들의 利益率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 집단 A에 속하는 기업 중에서도 特定 業種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外國人 投資企業 利益率은 전체 평균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 高稅率國 중 韓國에 대한 所得稅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移轉價格操作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國別限度에 의한 外國稅額控除制度를 택하고 있는 국가의 對韓 投資利益率이 특히 높다는 점 등은 다른 요인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韓國의 移轉價格課稅制度가 外國人 投資企業의 所得移轉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韓國의 移轉價格課稅制度는 불과 5년 전인 1989년에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도 극소수에 불과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移轉價格操作을 통한 所得移轉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 게다가 韓國의 移轉價格課稅制度는 獨立企業價格 決定方法 등의 규정을 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OECD의 勸告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外國人 投資企業의 利益率 構造에 대한 分析은 향후 韓國의 移轉價格課稅制度의 發展方向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外國人 投資企業들이 移轉價格操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가 租稅收入의 일부를 상실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동시에 移轉價格操作이 韓國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外國人 投資企業에 만연되어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外國人 投資比率이 아주 높은 기업이라든지, 특정 產業에 속한다든지, 또는 外國人 投資者가 특정한 국가에 거주한다든지 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에만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政府는, 물론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기업을 감시함으로써 正當한 課稅權을 확보해야 하지만, 租稅摩擦을 피하고 外國人 投資를 活性化하기 위해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나친 資料提出 要求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去來類型 또는 價格決定方法別로 비교가능한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서 政府는 移轉價格操作의 가능성이 특히 큰 특정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면 그 이외의 部門에 대해서는 移轉價格 事前協議制度(Advanced Pricing Agreement) 등을 통해서 外國人 投資企業의 향후 자료제출 부담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다른 國內 企業에 비해 利益率이 상당히 낮은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해 정부는 移轉價格操作의 혐의를 두고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의 政府든지 獨立企業價格을 산정하는 네번째 방법으로서 比較利益法(Comparable Profit Method)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移轉價格操作 외에도 外國人 投資企業과 內國人 企業의 利益率 격차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利益率의 격차가 바로 移轉價格操作으로 인한 所得移轉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韓國 政府는 향후 移轉價格 課稅制度를 정비함에 있어서 제도의 변경이 外國人 直接投資의 흐름에 미치는 효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課稅權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移轉價格課稅制度를 강화하여 韓國의 正當한 課稅權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결과 外國人 直接投資의 유입이 크게 줄어든다면 그것이 과연 國家 利益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韓國 政府에 正當한 租稅를 납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外國人 投資企業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과연 國家經濟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政府는 外國人 投資環境의 改善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外國人 投資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移轉價格課稅制度를 통해서 外國人 投資를 크게 감소시킨다면 이는 國家政策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간의 세심한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政府가 租稅減免을 통해 外國人 投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高度技術 隋件事業의 대부분이 機械工業에 속하며, 동시에 機械工業部門은 移轉價格操作의 가능성이 매우 커 移轉價格課稅制度의 강화가 外國人 直接投資 유입에 惡影響을 미칠 경우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稅務當局은 그 동안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았던 韓國 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관련된 移轉價格操作에 대해서도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經濟的 效果의 측면에서 海外直接投資의 유출이 外國人 直接投資의 유입보다 더 낫다는 근거는 없다. 이는 移轉價格管理를 소홀히 함으로써 海外直接投資를 조장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外國人 投資企業에 대한 課稅權의 손상은 韓國 稅額 減少分만큼의 國民所得이 海外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海外에 投資한 韓國 企業에 대한 韓國 政府의 課稅權 상실은 그 자체가 모두 國民所得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韓國 企業이 韓國 所得의 일부를 海外 子會社로 이전할 때 그 子會社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전혀 稅金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韓國 稅收 減少額 중 적어도 일부는 海外로 유출된다. 과거에는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규모가 적어 移轉價格課稅 強化를 통한 이득이 그에 따른 費用보다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海外直接投資의 규모

가 外國人 直接投資 流入額을 능가하고 있으며 향후 兩者間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移轉價格管理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正當한 租稅收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外, 『新經濟의 國際化 戰略 細部推進 對策』, 1993.
-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各 年度.
- 金南斗, 『韓·美間 直接投資의 構造와 投資環境의 變化』, 政策研究 91-17,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金裕燦,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現況 및 改編方案』, 研究報告書 94-10, 韓國租稅研究院, 1994.
- 朴乙鏞,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와 技術導入」, 『韓國開發研究』, 1979 겨울호, 韓國開發研究院, 1979.
- , 「外國人投資 패턴의 變化와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 1981 봄호, 韓國開發研究院, 1981.
- 李光哲, 「韓國의 多國籍 企業에 대한 租稅制度의 검토」, mimeo, 弘益 大學校, 1991.
- 張世元, 「韓國의 移轉價格稅制 運營 報告」, OECD Workshop on Transfer Pricing, 1994. 4.
- 財務部 經濟協力局, 『外國人投資動向』, 各號.
- 財務部·韓國產業銀行, 『韓國外資導入 30年史』, 1993.
- 全國經濟人聯合會, 『製造業部門의 海外投資 收益性에 대한 조사』, 1991.
-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 年度.
- , 『經濟統計年報』, 各 年度.
-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海外投資統計年報』, 各 年度.
- Grubert, Harry, Timothy Goodspeed and Deborah Swenson, “Explaining the Low Taxable Income of Foreign-Controlled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in Alberto

- Giovannini, R. Glenn Hubbard and Joel Slemrod (eds.), *Stud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Grubert, Harry and John Mutti, "Taxes, Tariffs and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e Decision Making,"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1991.
- Harris, David, Randall Morek, Joel Slemrod and Bernard Yeung, "Income Shifting in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lberto Giovannini, R. Glenn Hubbard and Joel Slemrod (eds.), *Studies in International Tax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Hartman, David G., "Tax Polic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ume 26, 1985.
- Hines, James R. and Eric Rice,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 and American Business," NBER Working Paper No. 3477, Cambridge, Mas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0.
- Hufbauer, Gary Clyde, *U.S. Tax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Blue Print for Refor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Paris, 1979.
- ,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Paris, 1991.
- , "Measuring Taxes Paid by Multinational Enterprises," DAF/FE/CFA/WP2/WD(93)17, 1993.
- , *Tax Aspects of Transfer Pricing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 U.S. Proposed Regulations*, Paris, 1993.
- , *Intra-Firm Trade*, Paris, 1993.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2*, New York, 1992.

Weizman, Leif, "Transnational Compliances with Intercompany Pricing; The Case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ax Review*, October 1992.